

[최종보고]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2006. 12.**

서 울 행 정 학 회

## 제 출 문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본 보고서를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2

서울 행정학회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5
제1절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범위 .....	7
제3절 연구 추진체계 .....	12
<b>제2장 공직자의 윤리 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b> .....	13
제1절 「이해충돌 회피」 제도화의 필요성 .....	13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	17
제3절 이해충돌의 발생영역과 회피 방식 .....	22
<b>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b> .....	29
제1절 취지 및 목적 .....	29
제2절 개요 .....	30
<b>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사례 분석</b> .....	33
제1절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실태 분석 .....	33
제2절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 .....	36
제3절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및 위원회의 처리현황 .....	37
제4절 주요 기관별 이해충돌 가능성 분석 .....	48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1
제1절 취업의 개념 .....	101
제2절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	108
제3절 취업제한 대상 등의 재조정 .....	114
제4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	126
제6장 외국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	13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9
참고 .....	153
참고문헌 .....	165

## <표 차례>

<표 1> OECD 국가에서의 이해충돌 관련 법규들 .....	27
<표 2> 주요 경제부처의 퇴직후 취업률 .....	34
<표 3> 주요 부처별 퇴직후 취업한 기관의 유형 .....	35
<표 4> 취업확인 요청자 현황 .....	38
<표 5>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	39
<표 6> 취업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사례(예시) .....	42
<표 7> 대법원 부서별 업무내용에 따른 취업제한 이해충돌 내용 및 사례 ·	52
<표 8> 최근 5년간 중대형 로펌 영입 퇴직 판사의 퇴직과 영입시기 간격 ·	53
<표 9> 최근 3년간 주요 부처별 4급이상 공직자의 재취업 직종분류 현황 ·	57
<표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 후 취업관련성 .....	60
<표 11> 공정위와 기업간 고발 및 과징금부과 관련 소송건수 .....	62
<표 12>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중 로펌 재취업 현황 .....	64
<표 13> 경찰청 퇴직 후 취업관련성 .....	68
<표 14> 국세청 퇴직 후 취업관련성 .....	71
<표 15> 교육인적자원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	74
<표 16> 건설교통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	79
<표 17> 재정경제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	89
<표 18> 공윤법 대법원규칙(제25조 5항)과 각 부서의 관련업무 판단기준 ...	93
<표 19> 중앙부처업무의 취업관련성 .....	96
<표 20> 정부 업무 위탁수행하는 협회 및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	118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도 .....	14
<그림 2> 이해충돌 해소의 수단(OECD) .....	2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 공직자의 윤리는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즉 공직에의 취임 이전에서부터 공직 재직중, 그리고 퇴직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공직윤리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 중에서 우리의 경우, 그 동안 특히 퇴직후에 있어서의 공직윤리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공직자가 공직을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중이었던 공공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결국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철저한 감독권 행사를 제약,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경제적·행정적 특혜 및 편의제공 등을 통해 특정업체에 부당한 영업상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음.
-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업체로의 재취업 현상은 공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개인의 전문성을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이전에 공직 재직중의 인맥을 통한 청탁·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야기는 물론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인 측면도 크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행제도(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강화함으로써 공직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재직중 혹은 퇴직후의 이해충돌 및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책결정·집행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제2절 연구범위

- 본 연구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제안요청서에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정리하였음.

### ① 국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현황 검토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검토, 분석함.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와 운영상황을 분석함.
  -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체제 개관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체제 개관
  -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및 위반사례 파악

### ② 외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검토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에 대한 제도는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 외국에서 먼저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하는 점에서, 선진국에서의 관련 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 관련국가에서의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함.
  - 취업제한제도 운영시스템 및 운영기관
  - 취업제한제도 적용대상 공직자 범위 및 그 숫자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기관의 설정기준
  - 공직유관단체, 비영리 법인도 취업제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업제한기간 및 퇴직 전 담당업무 설정기간
- 취업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취업에 대한 개념 정립여부 및 그 내용
- 자격증(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여부
- (비상근)자문·자문형태의 취업에 대한 규제여부
- 취업제한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및 처벌수준 등

### ③ 현행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위의 논의를 토대로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1) 취업제한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경우 적정범위
- 비영리법인(사립학교·병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경우 적정범위 및 구체적 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포함시킬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정책적 문제점 및 대응논리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선정기준(자본금·외형거래액) 조정방안
- 영리사기업체 선정기준을 조정할 경우 관련사항 파악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및 운영실태 파악

#### (2)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할 경우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정립 필요성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제시

- 검찰·경찰 등 조사, 수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정립
-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정립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중 개괄조항으로 되어 있는 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제7호를 보완·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기관별(재경부·건교부 등)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추가가 필요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제시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직급·직위(장·차관/1급 이하)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성 여부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 현행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중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항 검토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및 운영실태 파악 등

### **(3) '취업'의 개념 및 확인절차**

-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의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되, (비상근)자문·고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 취업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국세청 등) 제시
- 취업의 개념 및 취업확인방법과 관련된 해외 유사입법례

### **(4) 취업제한제도 관련기간 조정방안 검토**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전제가 되는 퇴직 전 담당업무의 기간(현행 3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절한 설정기간 및 그 논리

-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현행 2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설정기간 및 그 논리
- 관련기간을 연장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 여부 및 그 대응논리 (국내외 관련 판례 검토·제시)
- 주요국가의 유사입법례 및 운영실태 검토

#### **(5) 기타 취업제한제도와 관련된 사항 검토**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퇴직공직자 및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처벌조항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 검토
-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할 경우 병행 개정되어야 하는 다른 법률(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등) 및 그 개정방향
- 취업제한제도 위반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 수집 및 분석·검토
- 기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제안

#### **④ 법적 쟁점사항 검토·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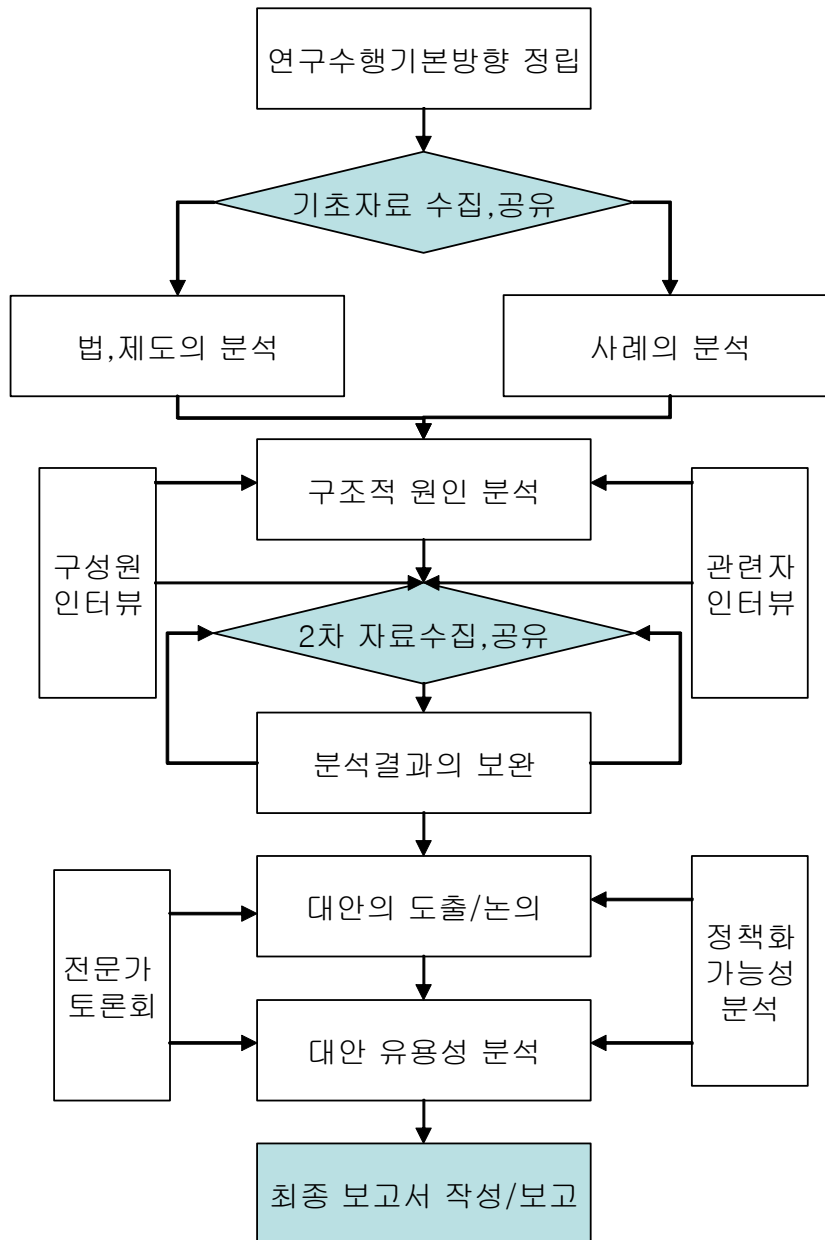
- 퇴직후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위헌의 소지 혹은 기본권의 침해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함.
-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국내외 관련 판례 포함) 침해여부
- 자격증(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법인을 포함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부

- 취업제한제도를 개선·강화할 경우 병행 개정되어야 하는 다른 법률(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 등) 및 그 개정방향

### 제3절 연구 추진체계

○ 동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체계 속에서 진행됨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도

## 제2장 공직자의 윤리확보와 이해충돌의 회피

### 제1절 「이해충돌 회피」 제도화의 필요성

#### 1. 기존 윤리관련 제도의 한계

-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즉 많은 법률들이 명목상으로 존재하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편적인 윤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다만 일반적인 범죄행위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조항이 그나마 처벌이라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우 공직자의 윤리나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부패방지나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화의 미비나 혹은 축소 지향적인 접근은 문제를 지낼 수 밖에 없음. 즉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화가 필요할 것임.
- 물론 그 동안 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그럴듯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작동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음.

-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해충돌의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윤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님.
-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현재 혹은 잠재적인)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이와 같은 제도들은 공직자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위법한 조성에 대한 판단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장관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이해충돌의 발생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단체가 신임 장관의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주식의 매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나 혹은 일부 여론에서는 재산권의 침해니 혹은 자유권의 침해니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미국은 법·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음.
- 한국과 미국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직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되는 수준의 엄격성 정도임. 공직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임.



## 2.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책임성 확보

-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함.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이기 때문임. 사인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함.
-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conflict of interest)”,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함.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여야 함.
-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음. 즉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발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 문제는 이해충돌이 결국 비윤리적 행위나 적극적인 부패의 형태로 발전한다는데 있음.
-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나 윤리문제에 관한한 주로 결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의 형성이 감시(감사), 적발,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음. 이것은 부패방지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낮은 확률의 게임임. 이와 같은 결과주의적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 부패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그래서 공직윤리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은 이와 같은 예방 지향적인 의무론적 입장에서의 접근임.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미비임. 즉 이들 법들이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은 하나의 필요조건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의 정의와 적용인 것임.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장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나 당사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해충돌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부패유인적인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성실성,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임.

## 제2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 1. 이해충돌의 의의와 유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여기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는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로 이익충돌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이익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서, 한 사람 내에서 혹은 두 사람 이상간에 발생하기도 함(Davis, 1998:589). 이러한 이익충돌은 한 사람의 특정한 이익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야 하는 자신의 적절한 활동을 방해하는 성향을 갖는 상황을 의미함.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충돌의 주요 구성요소는 관계, 판단, 이익, 적절한 행동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Davis,1999:24).
- 첫째,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익충돌의 경우를 의미한다.
- 둘째, 외견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로서,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익충돌의 상태로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 셋째,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갈등 야기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함. 따라서 개념상 추상적이고 또한 적용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음. 예를 들어서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규정중에서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그것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의 포괄성에 기인하는 것임.
- 한편 OECD(2003:53)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반적 정의와 달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OECD,2003:54-55) 맞춤형 접근(tailored approach)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영역별로 이해충돌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 회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No one may judge his/her own case)”임. 이러한 원칙은 자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구성원과 여타 사적 관련자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으로 인식됨.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분립 원칙과 최근에는 공-사 부문의 접촉 증대에 따른 구축되는 거버넌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OECD,2003:1-3)
-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즉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 즉 여기서의 관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함.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

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avoid)"라는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음.

### 3. 이해충돌의 발생과 부패

-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임. 즉 아무리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싶어도 자신의 이익이 직접 관련된 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 아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기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수행하기 어려움. 이해충돌의 회피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적 조치로서 이해됨.
- 물론 이와 같은 이해충돌이 바로 부패문제나 윤리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때문에 공직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임용 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부분 자신은 소유재산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이해충돌의 적극적 회피를 거부함.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은 의무론인 이해충돌의 회피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님.
- 왜냐하면 부패행위나 공정성을 상실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 후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의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임. 즉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 제도화에 있어서는 행위의 고의성, 자의성, 결과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대한 법제화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임.
- 이해충돌의 회피 문제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

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인 관계(제도)의 신뢰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임. 즉 이해 충돌의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은(즉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업체의 직원들도 대표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대리인의 신분이다) 모두 소위 대리인(agent)의 신분으로서 주인(principal)과 관계를 맺고 있음.

- 주인과 대리인간에는 신탁에 의한 대리, 즉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대리의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성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이해 충돌은 이와 같은 신뢰성 있는 대리인 관계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물론 논란이 되었던 장관들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한 대리관계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복대리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해충돌에 처하고 있는 장관의 임명권을 가진 주인격인 대통령에게 처리문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간의 직접적인 대리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장관과 국민은 복대리의 관계라는 점에서, 시민단체가 이해충돌의 회피를 요구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대리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장관이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대통령의 신뢰에 근거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의 대리관계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주인은 대리인의 성실한 신탁업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주장할 권한을 갖고 있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주인(국민이나 대통령)을 배반할 수 있는 “이해 충돌”에 직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임.
- 즉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

며, 부득이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였거나 사전에 이해충돌의 가능성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것의 해소를 요구해야 함. 이것이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임.

- 적어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비추어 본다면, 이해충돌의 회피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해충돌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의 회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관계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논란이 되었던 일부 장관의 경우, 문제의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하는 대리인의 실패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음. 혹은 국민과의 관계(즉 복대리의 관계) 보다는 임명권장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리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나 이것의 회피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대리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함. 이것도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

### 제3절 이해충돌의 발생영역과 회피 방식

#### 1. 이해충돌의 발생영역

-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발생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공직에의 입직단계, 재직중, 그리고 퇴직후의 단계에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통상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직 재직중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공직의 특성상 입직단계와 퇴직후의 단계에서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물론 이와 같은 입직전 혹은 퇴직후의 이해충돌은 재직중의 직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즉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는 재직중의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직전의 상황 및 퇴직후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입직전의 이해충돌문제는 주로 공직자가 입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입직후 담당하게 될 직무와의 이해충돌 문제로서 논의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장차관등 고위직으로 임용이 예정되어 있는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식 혹은 부동산)과 담당하게 될 직무가 이해충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통신 관련 주식을 보유한 인사가 관련 부처에 임용될 경우, 이 공직자가 주도하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공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우리의 경우, 이 제도는 재직중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에서의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재직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해충돌도 역시 앞서의 경우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음. 즉 재직중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혹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사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사적인 연고관계도 공적인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이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에 대한 회피규정을 두어서,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물론 이에 대한 회피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에도 공직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음.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음. 하나는 퇴직후에 재직중 지득/확보하고 있는 공적인 정보와 권한을 퇴직후에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혹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퇴직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에의 고용을 예상(혹은 약속)하여 재직중에 이 기업에 대하여 표면상 공정하게 보이는 이권(인허가권 등)을 부여하고, 퇴직후에 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어느 경우이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추구하여야 할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공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퇴직후라 할지라도 재직중과 유사한 이해충돌 회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공직자에게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은 입직전의 상황에서부터 재직중, 그리고 퇴직후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2. 이해충돌의 회피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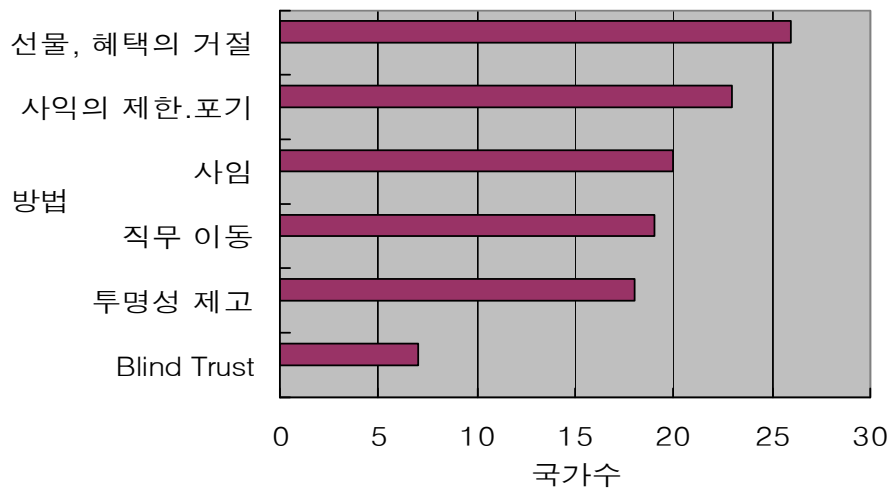
- 이해충돌의 회피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소위 “주인-대리인”이론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결국 대리인인 공직자가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대리인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
- 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음. 즉 대리인의 입장이나 혹은 주인의 입장이나에 따라서 구분됨. 예를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소극적 회피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혹은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하여 이해충돌의 해소하는 적극적인 회피방식이 있음. 그러나 대리인 관계의 철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회피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소극적 회피와 적극적 회피의 2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음.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임. 비록 인

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체계적인 이해충돌 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자체를 윤리성 확보를 위한 핵심의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님. 같은 논리로서 비실명의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위법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임.
-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해충돌은 공직에의 입직전, 재직중, 그리고 퇴직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단계별로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할 수 있음.
- 먼저 입직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 제도의 경우처럼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관련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물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직전에 공직 후보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담당하게 될 직무간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재직중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는 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해소방안이 제한적이거나 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특정 직무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안을 들 수 있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 퇴직후 발생가능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후 취업의 제한에 대한 규정임. 즉 현행법에서는 퇴직후 2년간 퇴직전 3년동안 담당하였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음. 물론 현행 법률상 많은 허점이 있지만,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퇴직후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참고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가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OECD의 경우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자료: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p.74.

<그림 2> 이해충돌 해소의 수단(OECD)

<표 1> OECD 국가에서의 이해충돌 관련 법규들

형태	국가별 구체적 법규
기본 법규 (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란드 : 공무원법(1988),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기업 활동 제한 법(1997)</li> <li>· 터키 : 이익의 선언과 부패방지에 관한 법(1990)</li> <li>· 오스트리아 : 공무원 강령, 사법강령</li> <li>· 미국 : 형법중 뇌물, 독직과 이익충돌 규정(Title18, Ch.11, )</li> <li>· 아이스랜드 : 공무원법(1996), 행정법(1993)</li> <li>· 그리스 : 공무원 강령(법 2683/1999)</li> </ul>
부수적 법규 (지시, 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 연방행정상 부패방지에 대한 조항(1998)</li> <li>· 미국 :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원칙(대통령지침 12731/1990)</li> </ul>
법적 문서 (령, 협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 하원의 상설적 규정</li> <li>· 스웨덴 : 공공부문 특별협정</li> <li>· 아일랜드 : 재무부 회람</li> <li>· 덴마크 :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li> </ul>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 정부가 승인한 각료 핸드북(1998)</li> <li>· 캐나다 : 공무원의 이익충돌과 퇴직후 고용에 관한 강령(1994)</li> <li>· 영국 : 공무원 관리강령(1995)</li> <li>· 미국 :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표준</li> </ul>
비법적인 문서 (지침, 조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 윤리감독관의 지침</li> <li>· 미국 : 비공식적 자문서, 비망록 등(OGE), 비망록(법무부)</li> <li>· 덴마크 : 각료와 공무원간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1998)</li> </ul>

자료 :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pp.46-47의 자료를 재정리하였음.



## 제3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와 개요

### 제1절 취지 및 목적

-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재직 시 취득한 기밀정보 혹은 대인관계 등을 이용, 특정기업 혹은 사적이익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공직에 대한 신뢰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임
- 공직자가 재직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은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화 등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제2절 개요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토록 함
-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기준 및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가. 취업제한 대상자(시행령 제31조)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나. 취업제한 기간(법 제17조제1항)

- 퇴직일로부터 2년간(취업제한 대상공직자가 퇴직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업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 기산은 각 퇴직기관의 퇴직일을 기준)

### 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33조)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



- 취업제한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단 다음 협회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라.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시행령 제32조제1항)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 단위 조직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 부서업무
- 파견 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

마.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제2항)

- 등록의무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함
  - a.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b.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c.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d.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e.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f.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g.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

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4장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사례 분석

### 제1절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실태 분석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이 반드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님. 특히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적인 직무 연관성에 기초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퇴직후 사실상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취업을 합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먼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후 어떠한 취업양태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최근 박재완 의원이 구체적인 조사를 하였음. 이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sup>1)</sup>.

#### 1.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실태

-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총 2,295명의 퇴직후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89명을 제외한 1,906명중 1,217명이 취업하여 확인 가능한 퇴직 공직자 중에서 약 64%가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취업율은 재경부가 가장 높아서 9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조달청(88%), 공정거래위(85%), 산자부(84%),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80%), 국세청(77%) 순으로 나타났다.

---

1) 이 내용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2> 주요 경제부처의 퇴직후 취업율

기관	재경부	조달청	공정위	산자부	금감위, 금감원	국세청
취업율	91	88	85	84	80	77

- 전체적으로는 협회·조합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제부처 출신들은 ① 금융권(53명), ② 대형 로펌(46명), ③ 민간대기업(30명) 순임. 이익단체인 협회·조합에 재취업한 부처는 ①건설교통부(18명), ②해양수산부(17명), ③조달청(14명), ④산업자원부(12명), ⑤중소기업청(10명), ⑥환경부(7명), 보건복지부(7명), 농림부(7명) 순이며, 장·차관(급)을 지낸 정무직 공무원들은 ①공사·공단·공공단체·협회(25명), ② 기업체(18명), ③ 대학교(16명), ④ 대형 로펌(6명)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관련회사로 재취업한 공직자들도 39명에 이르렀는데, 건설교통부(39%), 감사원(15%), 국세청(8%) 등 건설도급, 감리·감독,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융감독원 출신들은 시중 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퇴직자 60명 모두가 시중금융기관 감사(55명, 92%), 시중금융기관 대표이사·고문·사외이사·전무(5명, 8%)로 자리를 옮겼음.

## 2. 고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의 특징과 시사점

○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직당시의 피감독기관이나 업무관련 이익단체인 협회·조합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가장 많음
- 금융·조세·공정거래·특허관련 공무원들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재직 중 담당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관여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재정경제부는 금융공기업으로, 금융감독원은 시중금융기관으로, 국세청은 주류관련회사로, 조달청은 협회와 조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로펌으로, 건설교통부는 건설회사로 옮기는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퇴직전 담당업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음.

<표 3> 주요 부처별 퇴직후 취업한 기관의 유형

퇴직전 소속부처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정위	산자부	금감위/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건교부	복지부
주된 취업분야	금융권	협회, 조합	로펌	업무유관단체	금융기관	세무사	금융권	협회, 건설관련사	산하단체
취업 집중율	56%	35%	50%	47%	41%	51%	20%	4%	15%

주 :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이외에 주로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

감사원의 경우, 건설관련사에 다수 취업(12%)

보건복지부에는 식약청 포함.

## 제2절 이해충돌 가능성 높은 사례의 분석<sup>2)</sup>

- 지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 5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으로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음.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

2) 이 분석 자료는 필자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분석하였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제3절 퇴직후 취업확인 요청자 및 위원회의 처리현황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요청한 공직자는 총 59명에 달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59명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취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
  - 그러나 퇴직자 59명 중 39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66%)했으며, 이들 중 8명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 재정경제부(유관기관 포함),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중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비율도 87%(총 31명 중 27명)에 달함.

<표 4> 취업확인 요청자 현황

(단위 : 명)

소속부처	전체	윤리위 취업불가 통보	윤리위 취업가능 통보			
			부처관련 업체 <sup>a)</sup>	업무관련 업체 <sup>b)</sup>	무관	판단유보 <sup>c)</sup>
재정경제부	5	0	5	0	0	-
국세청	8	0	8	1	0	-
관세청	1	0	1	1	0	-
조달청	4	0	2	0	2	-
공정거래위원회	4	1	2	1	1	-
금융감독원	8	0	8	2	0	-
금융감독위원회	1	0	1	0	0	-
교육인적자원부	1	0	0	0	1	-
보건복지부	2	0	1	1	1	-
국방부	1	0	1	0	0	-
농업진흥청	2	0	2	0	0	-
문화관광부	1	0	1	1	0	-
법무부	2	0	0	0	2	-
산업자원부	3	0	2	0	1	-
정보통신부	1	0	1	0	0	-
해양수산부	4	0	3	1	1	-
행정자치부	2	0	0	0	2	-
대검찰청	6	0	-	-	-	6
감사원	3	0	-	-	-	3
전체	59	1	39(66%)	8(21%)	10	9

※ 자료 :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확인 요청자 명단

- a) 부처관련 업체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
- b) 업무관련 업체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위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 혹은 협회
- c) 판단유보 :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연관성 판단을 유보한 경우. 감사원과 대검찰청.



## 1. 부처관련 업체에 취업한 사례

-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자 중 상당수는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수 없음. 또한 관련 협회에의 취업제한은 '취업해선 안된다' 는 규정만 있을 뿐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전혀 없음.
- 다음 표는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화 한 것임 .

<표 5> 퇴직 전 소속 부처와 관련된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기관 및 협회	직위	취업 업체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3명)	부사장	SK씨앤씨(주) 사외이사
	이사	(주)새한 사외이사
	감사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8명)	자산운용감독국장	미래에셋생명(주)
	조사1국장	현대증권(주)
	전주출장소장	(주)전북은행 감사
	증권검사2국장	한국신용정보(주) 감사
	은행검사1국	롯데카드(주) 감사
	감독총괄국장	하나증권(주) 감사
	은행감독국장	굿모닝 신한증권(주) 상근감사
보험검사국	녹십자생명보험(주) 상근감사	
협회 취업자 (7명)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농업진흥청 농업연구원	한국종자협회 회장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	(사)한국에너지협회의회 사무총장
	농업진흥청 축산연구소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장
조달청 물자관리팀	(사)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 예금보험공사 출신 관료의 취업은 교묘하게 범망을 피한 사례임. 이들은 해당 업체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대부분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회사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이 있으므로 취업을 제한해야 함.
-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관료의 금융기관 취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퇴직한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대상자 120명 중 64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음. 업종별로는 증권(21명), 은행(17명), 보험회사(13명) 순으로 많았음.
- 전문 인력의 활용과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이유로 이들의 취업을 묵인해왔으나,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할 경우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함.
- 관료는 퇴직후 출신부처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장받고,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해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로비스트를 확보하게 됨.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인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공직윤리위가 협회에의 취업을 제한한 사례는 전혀 없음. 협회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된 것임. 공직윤리위는 협회에의 취업 확인 요청자 7명 모두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협회에 취업한 공직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음. 또한 협회에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역시 없음. 협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임.

## 2. 취업제한 규정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례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8명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해 퇴직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6> 취업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사례(예시)

기관명	이름	퇴직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관성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공정거래위원회	O	부당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독점관리과장이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SK해운(주) 고문으로 취업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고(6호)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금융감독원	S	자산운용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 간접투자상품을 심사하는 자산운용감독국장(증권담당부원장보)이 간접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으로 취업	허가에 직접 관계되고(2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B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코스닥 시장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1국장이 증권중개업체인 현대증권(주)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고(6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국세청	J	김천과 구미지역의 조세부과 및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김천세무서장과 구미세무서장을 역임한 퇴직자가 김천과 구미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주)피앤티 사 외이사로 취업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고(4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관세청	P	김해국제공항의 압수물품 관리 및 단속을 하는 부산세관 조사국장과 제주공항의 화물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업무를 하는 제주세관장이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관 통과절차, 수출입화물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공항(주) 감사로 취업	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고(6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문화관광부	O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이 기금 수혜자인 케이블 방송사들의 모임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업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
보건복지부	M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급여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책 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으로 취업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해양수산부	B	동해지역의 항만운송사업체를 감독하고, 항만운송법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이 있는 동해 해양수산청장이 항만운송사업체들이 회원인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로 취업	생산방식, 규격에 대한 검사(3호),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6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①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 SK해운(주) 고문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 수립과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며, 경쟁촉진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함.
- SK해운(주)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3년 7월 대규모집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4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2003년 10월에는 부당내부거래로 21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바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② 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미래에셋생명(주) 상임고문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자산운용회사의 인허가 및 감독, 간접투자상품을 심사하며, 증권담당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의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증권검사1국, 증권검사2국을 총괄함.
- 미래에셋생명(주)은 변액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2호(허가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③ 전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 : 현대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증권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과 코스닥 시장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현대증권(주)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증권 중개업체로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④ 전 김천, 구미 세무서장 : (주)피엔텔 사외이사

○ (주)피엔텔은 김천과 칠곡에 법인등기 된 사업장이 있음. 김천세무서와 구미세무서는 김천과 구미지역 법인의 조세부과 업무를 담당함.

○ 김천세무서는 김천시와 성주군을, 구미세무서는 구미시와 칠곡군이 관할구역임. 세무서는 체납국세 및 국세환급, 국세조사, 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원천세 징수 및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무서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⑤ 전 제주세관장, 부산세관 조사국장 : 한국공항(주) 감사

○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김해국제공항 김해세관의 관세범 범칙수사와 압수물품 보관 관리,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등을 담당함. 제주세관장은 제주의 수입, 수출 화물에 대한 총괄 감시 및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

- 한국공항(주)은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화물조업, 화물 및 수하물 탑재 및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화물 종합서비스 회사임. 수출 수입화물의 하역과 통관 통과 절차, 수출입화물의 보관 서비스를 제공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⑥ 전 문화관광부 차관 :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운용하며, 문화산업진흥기금 중 일부는 케이블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문화산업진흥기금융자사업에 지원됨. 케이블방송사는 이러한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임.

- 문화관광부 차관은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문화산업진흥위원회 당연직위원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보좌함. 또한 파일럿프로그램 선정과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임.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는 제주방송, 경기방송, 안양방송, 및 CJ 미디어, 우리홈쇼핑, 한국 경제TV, 파워콤 강남 케이블 TV 등 147개 케이블방송사들이 회원으로 하는 협회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1호(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됨.

⑦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 한국계약협회 부회장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과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보건정책 계획과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관련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를 담당함. 보건복지부는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약제급여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개별 약가의 산정과 급여 여부 뿐 아니라 약품의 가격 결정 방법과 관련된 제반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보건복지부의 권한(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 및 제9조)에 속함.

- 한국제약협회는 제약회사를 회원사로 하며,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집단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⑧ 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한국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는 등의 행위를 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이 있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7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동해 5개 무역항과 1개연안항, 14개 국가어항의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하는 취업제한 대상 협회이며, 협회 회원사인 대한통운, 세방기업, 쌍용해운, 영신육운, 용진상사, 대한물류, 대동물류, 동양시멘트, 한국철도유통, 라파즈한라시멘트 등의 업체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운송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3호(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 3. 시사점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실상 동제도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윤리위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서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윤리위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요건을 따져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이와 더불어 공직윤리위는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난 퇴직 공직자 8명에 대해 재검토 해 해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4절 주요 기관별 이해충돌 가능성 분석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하면,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연관성 판단기준으로서,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 단위 조직의 장 및 소속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 단체에서 소속하였던 업무를 기준으로 함.
  
-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음.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이러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검토해 본 결과,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한 면이 있음.
  
- 따라서 헌법기관 및 주요 중앙부서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향후 퇴직 후 취업이 예상되는 분야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판단되거나,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실제로 헌법기관이나 중앙부서에서 퇴직 후 취업하거나 활동하는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함.

## 1. 대법원

- 대법원은 헌법 제 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 102조 제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각종 재판의 최종 심판권과 규칙제정권,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여러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법원의 조직은 12명의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재판부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교육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대법원 아래에 하급법원으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2항에 의하여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제25조 5항에 일임하고 있음.
- 대법원 규칙 제25조 5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1호)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

-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 현행 대법원 규칙 제25조 2항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 150억원의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1항을 수정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임. 그러나 퇴직 법관 및 5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이 퇴직 후 주로 취업하고 있는 로펌 중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은 없음.
- 따라서 대법원의 경우, 퇴직 후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 규칙에 취업제한에 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는 한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일부 대법원 퇴직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발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며, 특히 법관의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하에서는 대법원 부서별 이해충돌이 제기되었던 사례 및 발생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 중 98명이 중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하였음. 직급별로는 대법관급 이상 8명, 법원장급 12명, 고법부장급 5명, 지법부장급 31명, 판사급 42명이 로펌으로 이직하였음. 특히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일반변호사 40%대인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6%였다. 또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13명이 수임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4608건 중 63.2%에 해당하는 2911건이 대법원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음.

-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의 6급 이하 공무원은 등기, 호적, 공탁, 경매 등의 업무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재산등록의무자인 5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5급 이상으로 승진하여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떠나게 된다면 실제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6년 동안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 이 가운데 법원 경매나 등기신청 접수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10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전이 뒤를 이었음. 하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함. 이와 같은 사실들은 법원 공무원들의 퇴직후 취업에 따른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표 7> 대법원 부서별 업무내용에 따른 취업제한 이해충돌 내용 및 사례

담당 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취업가능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 내용 및 사례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재판부	각종 민형사상 재판 담당	법무법인 및 영리 사기업체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 중 98명이 중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였음. 직급별로는 대법관급 이상 8명, 법원장급 12명, 고법 부장급 5명, 지법부장급 31명, 판사급 42명이 로펌으로 이직하였음.(국민일보 2006.11.21)</li> <li>-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일반변호사 40%대인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6%였다. 또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13명이 수임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4608건 중 63.2%에 해당하는 2911건이 대법원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별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이○○(94.3%), 송○○(92.7%), 정○○(82.2%) 순이었으며, 이○○ 대법원장의 경우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률은 (74.6%)로 전체 4위를 차지했다. (조선.2006.10.17)</li> <li>-퇴직 고위 법관의 대기업 재취업(2003년 이후 퇴직 고위 법관의 대기업 9명 취업)</li> </ul>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1호)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과	호적 등에 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 호적, 공탁 관련 사무 실무자의 특정 법무법인 및 법무사 사무실과 이해관계 형성 가능성</li> </ul>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등기호적과	부동산 등기 및 법무사 등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6년 동안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 이 가운데 법원 경매나 등기신청 접수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10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YTN.2006.10.12)</li> </ul>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공탁상업등	공탁 및 상업등기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탁 및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소와 이해관계를 형성</li> </ul>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

	기 과				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재 판 사 무 국	각종 재판에 대한 재판사무 및 행정처리 업무	법무법인 및 법무사 각종 재판에 있어서 편리 제공 법원경매관련 영리사기업체 또는 개인과 이해관계 형성	법원경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영리사기업체 및 개인과 이해관계 형성 최근 6년 동안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180명. 이 가운데 법원경매나 등기신청 접수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공무원이 10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직장근무 이탈과 음주운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YTN.2006.10.12)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3호)

- 대법원 규칙에 법관의 취업제한을 규정하는 자본금 50억 이상 및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해당 로펌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실제 퇴임 법관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에 대한 취업제한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음. 현행 대법원 규칙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 8> 최근 5년간 중대형 로펌 영입 퇴직 판사의 퇴직과 영입시기 간격  
(퇴직3년 이내 영입자 범위내 조사)

퇴직 시기와 영입시기 간격	인원 수(명)	비중
0~3개월	92명	94.0%
7~12개월	3명	3.0%
1~2년	1명	1.0%
2~3년	2명	2.0%
합계	98명	100%

※ 참여연대, 사법감시28호

-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판사의 중대형 로펌 재취업 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98명의 판사중 취업제한 기간을 준수한 판사는 단지 2명뿐이다. 특히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라는 규정때문

에 실제 퇴직 판사중 92명(94%)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의 퇴직 후 2년이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퇴직 판·검사들의 재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대형 로펌은 고위직 판사를 선호하고 대기업은 고위 검찰출신자를 선호함. 이것은 로펌은 재판중심이고, 대기업은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사례: 법사위 국감자료, 3년간 51명 중 원천고수 1명뿐  
(법률신문 2006년 10월 19일자 보도)**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기간을 어겨가며 대기업 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1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이 삼성, 두산, SK 등 대기업 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검사 출신 대기업 취업 변호사 51명 중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제하는 재취업제한기간 경과 후 대기업에 입사한 변호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목적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사 출신 대기업 취업자 42명 중 삼성에 재취업한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 4명, 두산·SK·LG에 각각 3명씩, 한화 2명, 기타 17명 등이었다. 이들 중 퇴직 다음날 재취업한 검찰출신 변호사가 5명이고, 1개월 이내 9명, 2년 이내 27명이었으며 취업제한 기간 경과자는 단 1명 뿐이었다. 특히 2000년 6월23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고발 이후 2003년 12월 기소 전까지



검사 출신 공직자 8명이 삼성그룹산하 기업으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산그룹 박○○·박○○ 회장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3월에는 법무부 고위 관료 출신 검사 2명이 두산그룹으로 스카웃된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한편 같은 기간 대기업에 취업한 9명의 판사 출신 중에는 삼성에 취업한 경우가 5명, 두산 1명, SK 2명, 한화 1명 등이었고 취업제한기간을 다끝내고 취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임 의원은 “최근의 ‘재벌봐주기 기소와 재판’이라는 논란이 있는 일부 재벌관련 사건의 핵심에 재취업 판검사 퇴직자가 있지 않나 의혹이 간다”며 “일반공무원보다 취업제한 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할 판검사 출신들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법관의 퇴직후 로펌 및 변호사 개업의 전관예우에 대해서 살펴볼 때, 2000년 퇴직한 대법관 출신 A변호사의 경우 퇴직2년째 월 2억 2600만원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1억 800여만원에 그쳤음. 이른바 전관예우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대법관의 법관 퇴직후 변호사별 전체 수임사건 대비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이○○(94.3%), 송○○(92.7), 정○○(82.2%) 순(順)이었으며, 이○○ 대법원장의 경우 변호사 시절 대법원 사건 수임률은 74.6%로 전체 4위를 차지했음.
- 실제 재판과정에서 대법관 출신이 대법원 사건을 맡을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3’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음. 일반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40%대인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6%였음.(조선.2006.10.17)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또한 퇴직 법관의 대형 로펌행과 더불어 보다 큰 문제는 로펌이 퇴직 법관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 퇴직관료(경제부총리, 공정위, 국세청, 금감위 등)들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제도의 구멍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금감위 12명, 국세청 7명, 재경부 7명, 공정위 10명, 기타 9명 등으로 퇴직 후 바로 대형 로펌에 고문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음.
- 최근 각종 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 국내 최대 로펌 김&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논란이 되고 있음. 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 이외에도 탈세의혹으로 국세청으로부터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정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김&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했음. 그런데 김&장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퇴직한 고위 간부 출신들이 대거 취업을 한 상태임.
- 국세청 내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술밥을 먹었던 전직 국세청 간부들과 맞대결을 펼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당혹해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후 2년 간 취업을 금지시키고 있음. 법의 취지로 본다면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로펌에 퇴직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함.
- 실제로 그들이 퇴직 후 곧바로 일반 대기업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임. 문제는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희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임. 시행령에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자본금 50억 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으

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두었기 때문임. 이 같은 시행령에 따라 회사 설립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로펌과 회계법인은 전직 고위관료들이 퇴직 직후 가장 많이 진출하는 정거장이 되고 있음.

- 김&장의 경우 최○○ 전 국세심판원장, 최○○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 전 국세청장, 황○○. 이○○, 전○○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이 즐비한데, 이들은 대부분 퇴직 6개월 이내에 김&장에 들어갔음.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선상에 거론된 바 있는 이○○ 전 재경부장관도 김&장의 고문을 지냈으며, 역시 론스타 관련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 전 금감위원장도 법무법인 울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음.

<표 9> 최근 3년간 주요 부처별 4급이상 공직자의 재취업 직종분류 현황

해당부처	재취업자 총수	금융권	대형로펌	대기업	협회·조합	기타
재정경제부	41명	25명(60%)	7명(17%)	1명(2%)		
공정위	17명		10명(59%)	4명(24%)		
금감위	75명	38명(51%)	12명(16%)			
국세청	143명		7명(5%)	3명(2%)		주류관련 업체 13명(9%)
감사원	32명	10명(31%)		5명(16%)		
건설교통부	51명				18명(35%)	건설관련 회사 15명(30%)

※ 조세일보(2006.11.29)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및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관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관리,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현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하에 공보관, 감사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아래 총무과, 기획조정실, 법제실, 선거국, 정당국, 조사국, 전자선거추진단, 선거연수원 등의 직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단속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 후 취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특히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총괄기획관실, 조직행정과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하거나 활동할 경우 업무관련성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 후 할 수 있는 취업이나 활동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된 것이 많음.
  - 각종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이나 선거브로커 등의 취업이

나 활동을 통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한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판단됨.
- 실제로 2005년 4·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여당의 공천을 받은 임○○ 전 사무총장은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지적받은 사례가 있음.

**# 사례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임○○의 정당공천  
(프레스리안 2005.4.18자 보도)**

- 2005년 4·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충남아산 지역구의 ○○당 후보로 공천되었음. 그러나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의 6호에 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조직행정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가능성
  - 또한 총무과의 공사, 제조, 물품의 구매 및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공직윤리법 제32조 2항에 규정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이외에도 법규해석과, 법무팀, 선거상황팀, 정치자금과, 정치자금조사과, 감사팀 등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없지만 정당이나 선거관련 취업이나 활동을 할 경우 상당부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관위업무 총괄 책 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출마</li> <li>• 지방의원 출마</li> <li>• 광역자치단체장</li> <li>• 기초자치단체장</li> <li>• 각종선거사무장</li> </ul>	선거업무를 총괄하 는 직책에 있으므로 공명선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법령에 의거하여 직 접 감독하는 업무(6 호)
총괄기획관실	결산·세입 업무 및 선거경비에 관한 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선서 사무장</li> </ul>	선거경비에 관한 결 산보고에 있어 전 동료에게 압력을 행 사할 가능성 있음	법령에 의거하여 직 접 감독하는 업무(6 호)
조직행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취업 또는 자문</li> </ul>	비영리법인의 설립 단계 또는 감독에 있어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허가·특 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li> <li>• 법령에 의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6호)</li> </ul>
법규해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관계법규 의 유권해석 및 운 용</li> <li>•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의 유권해 석 및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선거 사무장</li> <li>• 정당활동 및 취업</li> </ul>	공직선거나 정당활 동에 있어 자기 정 당에 유리한 유권해 석을 내리도록 청탁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법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행정소송 사무</li> <li>• 선거소송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법무법인 취 업 및 자문</li> <li>• 정당 및 선거사무 장 취업</li> </ul>	법무법인에 취업하 여 각종 행정소송이 나 선거소송에 청탁 을 제공하거나 정보 를 제공할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선거상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관련 사건· 사고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선거 사무장</li> <li>• 각종선거 출마</li> </ul>	선거관련 사고가 발 생할 경우 이를 무 마하기 위해 청탁이 나 압력행사 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정치자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 회계사 무(선거비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선거 브로커 및 사무장</li> </ul>	선거비용을 축소하 거나 조작하여 이를 용인하도록 청탁가 능성	해당사항 없음
조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선거 관계법 규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선거 브로커 및 사무장</li> </ul>	공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에 대해 무마하려는 청탁가능성	법령에 근거하여 직 접 감독하는 업무(6 호)
정치자금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비용 및 정치 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li> <li>• 국고보조금 수 입·지출에 관한 조 사·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에 취업</li> <li>• 각종 선거사무장</li> </ul>	정당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조작하 거나 선거비용을 축 소하는 행위 등을 무마시키려고 청탁 하거나 압력 행사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감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선거경비출납 계산서 서면감사</li> <li>공직자 재산등 록·심사·공개</li> </ul>	정당에 취업	지방선거경비출납계 산서를 조작하거나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 이 를 무마시켜달라고 청탁할 가능성	해당사항없음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제조·물품 의 구매·조달 및 관리</li> </ul>	각종 건설업체나 인 쇄관련 업체에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관위 공사나 물 품공급을 부탁하거 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li> <li>공사비나 물품구 입비를 부풀려 청탁 할 가능성</li> </ul>	공사 또는 물품구입 의 계약·검수에 직 접 관계되는 업무(5 호)

### 3. 공정거래위원회

-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공정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와 기업간의 소송에 대한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 소송건수에서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임.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하여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징금 비율은 평균 70%(금액 기준)에 달함.

<표 11> 공정위와 기업간 고발 및 과징금부과 관련 소송건수

연도	공정위			기업			소송 제기된 과징금 비율(%)
	고발(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고발(건)	과징금 관련 기업의 소송제기		
		건수(건)	금액(억원)		건수(건)	금액(억원)	
2002	11	91	879	42	26	652	74.2
2003	18	37	1497	44	17	1375	91.9
2004	22	91	358	56	19	307	85.7
2005	12	274	2590	38	19	2086	80.6
2006	27	109	1071	53	3	370	34.6

※ 자료: 공정위 홈페이지 통계자료, 공정위 2005년도 통계연보, 중앙일보 (2006.10.17)

- 이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자들이 취직한 대형 로펌들이 해당 소송을 많이 수임했고, 승소율도 높았음. 공정위가 과징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40%(건



수 기준) 넘게 패소하였음. 물론 공정위 상대 소송을 담당한 법률회사의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공정위 퇴직자가 없는 법률회사는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였음.

- 2002년 이후 공정위 퇴직 고위공직자들 중 11명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였음. 이들이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공정위의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사례: 공정위도 전관예우(중앙일보 2006년 10월 17일자 보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KT를 예로 들면서 공정위에도 '전관 예우'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KT가 다른 통신회사와 담합해 시내전화 요금을 정했다는 혐의로 113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KT는 같은 해 9월 불복 소송을 냈고, S법무법인이 소송을 맡고 있다. 그런데 당시 과징금 부과 결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A씨가 얼마 전 사표를 내고 S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소송 업무를 보좌한 팀장 한 명도 올 8월 이 법인에 영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퇴직자들이 자리를 옮겼다고 승.패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률회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유착 관계로 로비가 일어나거나 내부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권 위원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절반가량을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공직퇴직후 재취업한 로펌들이 도맡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위는 기업들을 상대로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이런 업무를 담당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발판삼아 기업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사무소로 전직해 관련 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 2항) 6호, 7호와 관련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로펌은 실제 취업제한기업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수의 공정위 고위 퇴직 공무원이 아무런 규제없이 재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15일까지 로펌들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정위 관련 소송사건은 모두 233건인데, 이 가운데 공정위 간부들이 재취업한 로펌들이 수임한 사건은 107건으로 전체의 45.92%에 이르고 있음.

<표 12>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중 로펌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전 직위	취업 업체 및 직위
김○○	부위원장	김&장 법률 사무소(고문)
오○○	심판관리2 담당관	한로법률 사무소(변호사)
임○○	하도급 국장	법무법인 바른법률(변호사)
오○○	상임위원	법무법인 율촌(고문)
조○○	부위원장	법무법인 광장(고문)
장○○	종합상담실장	법무법인 태평양(전문위원)
김○○	송무팀장	법무법인 광장(변호사)
안○○	상임위원	법무법인 세종(고문)
김○○	서울사무소 총괄과	김&장 법률 사무소(수석 전문위원)
박○○	심결지원 2팀장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이○○	독점감시팀장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자료 : 조세일보. 2003.11.29

- 공정위 출신들이 퇴직후 주로 가는 로펌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공정위 관련 사건의 대부분을 위임받는 김&장, 바른법률, 세종, 율촌, 태평양, 광장 등으로 재취업하였음
  
- 2002년 이후 공정위 임직원이 취업한 로펌들의 공정위관련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김&장(김○○ 전 부위원장, 김○○ 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재취업)은 공정위 관련 소송건수는 전체의 13.30%인 31건, 법무법인 바른법률(임○○ 전 하도급국장)은 23건(9.87%), 법무법인 세종(안○○ 상임위원, 박○○ 심결지원 2팀장)은 18건(7.73%), 법무법인 율촌(오○○ 전 상임위원, 이○○ 독점감시팀장)이 16건(6.87%), 법무법인 태평양(장○○ 전 종합상담실장)이 12건(5.15%), 광장(조○○ 전 부위원장, 김○○ 송무팀장)은 7건(3.00%)의 공정위 관련 사건을 맡았음.(아시아경제,2006.10.31)

#### 4. 경찰청<sup>4)</sup>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함(경찰법 제3조).
  
-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음.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의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교통의 단속 및 위해의 방지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러한 직무의 범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아래 1차장 7부, 2담당관, 16개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홍보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경무부, 생활안정부, 수사부, 교통지도부, 경비부, 정보관리부, 보안부 등의 부서를 가지고 있음.
  
-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이나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규정하지 않는 이해충돌내용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선 교통관리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이 퇴직 후 교통안전시설관련 업체에 취업할 경우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4) 여기에서는 서울경찰청의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밀접한 업무관련성 중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에 해당함.
-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사계, 강력계, 폭력계,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사무실 등에 취업하여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러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에 이러한 업무관련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취업이나 활동과 달리 각종 협회에 취업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해양경찰청 감시과장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폐기물해양배출협회에 취업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음.

**# 사례 2: 해양경찰청 감사과장의 관련 협회 취업  
(경향신문 2006년 9월 26일자 보도)**

- 해양경찰청 감시과장을 지낸 장모 서기관은 퇴직 다음날 곧바로 폐기물해양배출협회로 자리를 옮겼음.

○ 구체적인 경찰청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3> 경찰청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경찰청장 경찰차장	• 경찰청 업무 총괄	• 교통관련협회 취업 및 자문·고문 • 교통시설물업체 취업 • 경비업체 취업	• 교통관련 협회에 이권을 청탁할 가능성 • 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압력 행사가능성 • 도급경비를 청탁 또는 압력행사	해당사항없음
수사계	• 형사민원사건수사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취업	• 형사사건에 대한 민원청탁	해당사항없음
강력계	• 살인·강도·강간 및 방화 사범수사 • 절도, 차량도난 등 수사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취업	• 강력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 청탁	해당사항없음
폭력계	• 조직·상습·일반 폭력범죄 수사	•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취업	• 폭력사건에 대한 민원청탁	해당사항없음
교통안전계	• 교통사고 재조사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사무실 등 취업	• 교통사고 조작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해 청탁	해당사항없음
교통관리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업체 취업	• 시설물 설치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압력행사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

## 5. 국세청

- 국세청은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
  -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
  
- 국세청은 2006년 현재, 총무과·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부동산납세관리국 및 조사국을 두며,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두고 있음.
  
- 국세청의 여러 업무 중 국세청장과 차장,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1과, 세원정보과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되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들이 퇴직 후 취업할 경우 세금과 관련하여 감세, 탈세 등을 청탁하거나 조세정보를 제공하여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중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균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징세과, 소득세과 등으로 이들이 보험업계나 금융계, 법무·회계법인 등에 취업하여 조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법규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퇴직하여 법무·회계 법인이나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취업 또는 자문을 담당할 경우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되며 특히 7호의 “재산상의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이라는 조문을 다소 완화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 지난 10년간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86명 중 61명(70.9%)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국세청은 주류관련업체의 취업이 6명으로 가장 많았음 (경향신문 2005년 6월 30일자 보도).
  - 이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소비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취업사태가 있음.

**# 사례②: 국세청 고위퇴직자의 주류관련 업체의 취업  
(경향신문, 2005년 6월 30일자 보도)**

-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국세청 출신 6명이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함.
- 술 원료 주정 제조업체인 서안주정(3명), 대한주정판매(3명)
- 주세 징수를 위한 기본통계로 사용되는 병뚜껑 제조업체 삼화왕관의 부회장 자리는 1990년 후반 이후 국세청 퇴직자의 전유물
- 소비세와 관련된 납세편의 및 청탁이나 압력 행사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인 국세청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4> 국세청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국세청장 국세차장	• 국세청 업무총괄	• 법인 및 관련 협회 의 고문이나 자문	• 조세정보의 제공 이나 청탁 및 압력 행사 가능성	•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접 관 계되는 업무(4호)
총무과	•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물품구매 및 조달 관련 업체에 취업	• 물품구매나 조달 에 관련하여 청탁이 나 압력행사 가능성	• 공사 또는 물품구 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징세과	• 국세징수업무총괄 • 금융자산일괄조회 및 신용정보제공 등 채납정리업무	• 보험업계나 금융 계에 취업	• 개인의 금융자산 이나 신용정보에 대 한 정보유출 및 기 업에 이익제공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접 관 계되는 업무(4호)
법규과	• 조세법령의 해석 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 민간기업 및 관련 협회에 취업 또는 자문 • 법무 및 회계법인 에 자문	• 조세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당해기업 및 법인의 조세법령 해석상 편의제공	해당사항없음
부가가치세과	•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 및 세원관리, 정기조사대상 선정 등 • 부정환급, 금지금 거래관리, 과세자료 등	• 영리사기업체 취 업	• 부가가치세에 관 한 편의제공 및 압 력 및 청탁가능성	•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접 관 계되는 업무(4호)
소득세과	• 금융소득 종합과 세에 관한 사항 • 소득세 신고관리 • 면세사업자 관리 • 세무대리인의 관 리, 감독	• 법무법인 및 회계 법인 자문 및 취업 • 영리사기업체 취 업	• 자신이 소속한 법 인 및 사기업체의 탈세를 돕거나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탁 및 압력행사 가능성	•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접 관 계되는 업무(4호)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 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법인세과	• 법인세 신고 및 세원관리 •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업무 • 감면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과세자료 관리 및 적부심업무	• 비영리법인 및 관 련협회에 자문 및 취업 • 영리사기업체 자 문 및 취업	• 탈세나 세금감면 을 돕거나 법인세 제외를 위해 압력 및 청탁가능성	• 조세의 조사·부 과·징수에 직접 관 계되는 업무(4호)
소비세과 <sup>㉠</sup>	• 주세법에 의한 면 허와 면허업체의 관 리감독	• 주류 관련업 체에 취업	• 주세징수의 편의 를 제공하거나 압력 및 청탁가능성	• 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부동산거래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부동산 등 투기조장업체 관리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조장업체에서 제외되도록 청탁가능성</li> </ul>	해당사항없음
재산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관련업무</li> <li>• 상속·증여세 관련업무</li> <li>• 주식변동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사기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세 감세나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청탁 및 압력행사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4호)</li> </ul>
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납세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사기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납세자에게 조세 정보 제공 및 편의제공 청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4호)</li> </ul>
세원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 및 세원정보 자료 수집</li> <li>• 탈세정보 자료의 접수·처리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업체의 탈세를 조장하거나 탈세와 관련하여 청탁 및 압력행사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4호)</li> </ul>

## 6.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2006년 현재 2실, 6국, 2단, 3심의 관, 36과, 11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표적인 부서로 정책홍보관리실, 학교정책실, 인적자원정책국, 평생학습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운영지원팀, 시설기획담당관실 등으로 물품구매나 조달,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1호에 해당하는 부서에는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정책총괄과, 평가지원과, 학술진흥과 등으로 이들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퇴직하여 사립대학에 교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자문할 경우 재정지원, 평가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는 영리사기업체만 해당하지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중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7호)의 경우 기업체로 그 대상을 한정하기 보다는 법인, 협회, 산하기관, 교육기관 등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학정책과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부 퇴직공무원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받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음.

# 사례㉑: 교육인적자원부 퇴직공무원의 국립대학병원 및 대한교원공제회 취업(경향신문 2005년 6월 30일자 보도)

-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감사가 주요 재취업 통로
- 산하기관인 대한교원공제회가 출자한 교원나라 임원 등

- 구체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5> 교육인적자원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기획감사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의 고등교육 기관 행정감사 실시 계획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 범인에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감사와 관련된 편의제공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r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3호)</li> </ul>
운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나 조달에 관련하여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li> </ul>
지방교육재정 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대학에 사무직이나 교원으로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 배분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및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업무(1호)</li> </ul>

시설기획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급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설·설비 기준의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공사나 시설과 관련하여 청탁하거나 편의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li> </ul>
정책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지방대혁신역량강화)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법인에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및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li> </ul>
정책조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와 협력체제구축 및 공동사업운영</li> <li>• 경제단체와 협력체제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 자문 및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교육부와 공동사업유치를 위해 청탁 또는 압력행사가 가능</li> </ul>	해당사항없음
평가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평가 관련업무</li> <li>•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교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평가 및 재정지원에 편의제공을 부탁하거나 압력행사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li> </ul>
전문대학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회계, 재산 및 정원 등</li> <li>• 전문대학법인 운영지원사항</li> <li>• 법인예결산, 학생 정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교직원으로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운영과 관련된 재정, 재산, 예결산 등에 대해 편의제공 및 청탁가능성</li> </ul>	해당사항없음
대학정책과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병원관리</li> <li>• 대학원정원관리</li> <li>• 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병원의 감사로 취업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대학병원관리와 관련하여 청탁가능성</li> </ul>	해당사항없음
학술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 조성 지원</li> <li>• BK사업기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교직원이나 이사 등으로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 관련 청탁이나 압력행사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1호)</li> </ul>

## 7.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 및 간척과 육운·철도·항공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 2006년 현재 장관과 차관 하에 크게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정책조정관, 감사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물류혁신본부장, 기반시설본부장,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생활교통본부장, 건설선진화본부장 등 10개 핵심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의 업무는 주로 인허가, 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등이 많으며, 건설업체와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교부 공직자 퇴직 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부처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중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에 해당되는 부서 중 산하단체 특히 협회를 감독하는 곳에는 해외건설팀, 건설관리팀, 철도건설팀, 도로정책팀, 토지관리팀, 교통안전팀 등이 있음.
  - 이들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하여 관련협회에 취업할 경우 감독관청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㉔: 유관단체(협회)에 취업한 사례

(세계일보 2006년 9월 29일 보도)

-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건설교통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53명 중 61%(32명)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에 재취업함.
- 주로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에 취업하여 공무원행의 공정성 훼손

- 또한 6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퇴직하여 본인이 직접관리감독하는 주택공사나 시설안전기술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취업할 경우 감독관청의 방패막이나 입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 이에 해당하는 부서에는 안전기획팀, 도로정책팀, 수자원정책팀, 도시계획팀, 주거복지지원팀, 부동산평가팀, 도시교통팀, 자동차팀, 건설경제팀 등이 있음.
-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㉔-1: 건교부 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 재취업  
(문화일보 2006년 10월 12일자 보도)**

- 2005년 건교부 과장급 이상 퇴직자 13명 11명(85%)이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재취업함. 특히 감독관청의 담당공무원이던 간부는 감독대상 공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취업하였음.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일치되는 사례도 있어 감독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임. 2006년 6월 말까지 퇴직자 13명중 5명이 공제조합이나 유관 협회의 임원으로 재취업하였음.

**# 사례㉔-2: 1995-2005년 건교부 퇴직 3급이상 공무원의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 취업(한겨레21 2006년 1월 25일자 보도)**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건교부 퇴직 3급이상 고위공직자 177명 중 134명이 건교부 관련단체와 산하기관 74곳에 흡수된 것을 확인됨. 2004년 6월 현재 건설업계의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건교부 산하 55개 기관에서 임원을 차지하고 있는 건교부 임원 수는 46명이며, 민자고속도로 5개 회사의 사장 중 2명이 건교부 출신관리임.

**# 사례㉔-3: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급업체 취업사례  
(KBS 2006년 10월 13일자 보도)**

- 공공공사 발주처인 주공, 토공, 도공 등 산하기관 직원들이 도급업체인 영리사기업 임원들로 취업함. 건교부→공사 또는 협회→건설회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이직의 문제가 있음.

- 한편 건설교통부의 업무가 건설업체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택지지구 선정과 관련된 정보의 선점이나, 특혜의 제공 등의 이해충돌 가능성



이 높은 부서에는 해외건설팀, 건설환경팀, 공항개발팀, 도로관리팀, 지역발전정책팀, 공공주택팀, 주거환경팀, 신도시기획팀, 택지개발팀, 주택건설팀 등이 있음.

- 이러한 부서의 경우 퇴직 후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의 뇌물수수나 비리와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대중교통팀, 자동차팀 등에 근무하는 건교부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운송관련 업체와 관련되어 재정지원이나 인면허 등을 위해 로비하거나 청탁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인 건설교통부의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6> 건설교통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고객만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행위의 허가</li> <li>용도지역, 지구, 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사기업에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급공사를 얻어 내거나 유리한 지구 선정을 청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li> </ul>
총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연구용역/기술용역/정부대행사업 등 용역계약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사기업체나 관련협회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및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정부대행사업용역 계약을 위해 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li> </ul>
예산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대책 예산담당</li> <li>주택, 도시, 토지, 국민입대, 지리원 예산총괄</li> <li>SOC 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대책 관련업체 취업 또는 영리사기업체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C 용역을 수주받거나 재해관련 사업을 얻기 위해 청탁하거나 압력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해외건설팀 <sup>㉑</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li> <li>중소기업수주지원 활동</li> <li>해외건설협회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건설 관련 사기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받거나 수주를 위해 로비</li> </ul>	해당사항없음

건설환경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공사의 입찰 방법 업무</li> <li>• 건설기술 용역의 관리</li> <li>• 순환골재 인증관련 업무</li> <li>• 설계감리제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관련 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공사의 입찰이 유리하도록 방법을 개선하거나 설계감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청탁이나 압력행사</li> </ul>	해당사항없음
안전기획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li> <li>•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에 관련하여 청탁하거나 감독의 방패막이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건설관리팀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운영</li> <li>• 건설감리협회 지도감독</li> <li>• 건설공사현장의 점검제도 운영</li> <li>• 건설공사 품질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관련 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li>• 건설감리협회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능력, 품질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로비</li> <li>• 건설감리협회감독에 대한 방패막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물류정책팀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물류업 인증제</li> <li>• 물류협회</li> <li>• 물류관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물류업체 자문</li> <li>• 물류협회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협회의 방패막이 역할이나 물류업 인증을 위해 로비</li> </ul>	해당사항없음
물류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정책</li> <li>• 화물운송주선사업 업무</li> <li>• 화물휴게소 및 차고지 건설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사기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휴게소 및 차고지 선정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로비</li> </ul>	해당사항없음
고속철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개발사업의 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이나 개발사업자 관련 및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압력행사</li> </ul>	해당사항없음
철도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사업(여객 및 화물운송)면허 등 철도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li> <li>• 국유철도재산관리(선로, 승강장, 신호 제어, 역광장, 출자 자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공사에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사업에 관한 인허가에 대한 입법 로비를 하거나 감독관청에 대한 방패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li> </ul>
항공정책팀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항공운송관련 사업</li> <li>• 한국공항공사 경영평가, 주주권 행사</li> <li>• 항공관련단체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관련업체나 한국공항공사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과 관련하여 청탁하거나 한국공항공사의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공항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접근교통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선정 및 계획수립</li> <li>•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투자우선 순위 조정 및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시설관련 업체나 개발사업관련 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업체가 교통시설에 투자하도록 로비하거나 개발사업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청탁가능성</li> </ul>	해당사항없음

철도건설팀 <sup>㉑</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철도건설기술협회,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등 비영리법인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도로정책팀 <sup>㉒</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협회, 도로공사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도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시설 관련업체에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로비하거나 청탁</li> </ul>	해당사항없음
수자원정책팀 <sup>㉓</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자원공사 지도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지역발전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지역 지정, 변경</li> <li>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li> <li>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사기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에 개발지구에 대한 정보선점을 위해 청탁이나 로비</li> </ul>	해당사항없음
산업입지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이나 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1호)</li> </ul>
도시계획팀 <sup>㉔</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li> <li>감정평가업체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업체 및 감정평가업체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심의규제에서 제외받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로비, 또는 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주거복지지원팀 <sup>㉕</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유자금운용</li> <li>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도감독</li> <li>국민주택기금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공기업 및 공사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공공주택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지구지정</li> <li>택지개발사업</li> <li>주택공사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관련업체나 주택공사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지구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정보선점을 위한 로비나 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주거환경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li> <li>재정비촉진 시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로비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청탁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신도시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신도시 개발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 로비하거나 청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토지관리팀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중개업 제도운영</li> <li>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부동산평가팀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정평가사 시험, 면허, 자격관리</li> <li>한국감정원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 관련 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택지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임대주택 건설용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li> <li>택지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관련 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정보선점을 위해 청탁 또는 압력행사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주택건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관련 사기업체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보선점을 위해 로비</li> </ul>	해당사항없음
도시교통팀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조합지도감독(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li> <li>여객자동차운수단체에 대한 공제사업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이나 허가를 위한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li>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li> </ul>
대중교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li> <li>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재정지원</li> <li>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 명령</li> <li>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의 인면허 사항</li> <li>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조정 및 개선 명령</li> <li>택시운송사업의 인면허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관련 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지원이나 운송사업 인면허 등을 위해 로비하거나 청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2호)</li> </ul>
교통안전팀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안전공단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협회 및 공단지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자동차팀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지정 및 지도감독</li> <li>자동차정비업 지도감독</li> <li>중고자동차매매업 지도감독</li> <li>자동차폐차업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업체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 역할이나 검사대행자 지정을 위해 로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p>건설경제팀 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지도감독</li> <li>•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조합 및 건설업체 자문 또는 취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관청에 대한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가 유리하도록 청탁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	--	--	--	---

## 8. 재정경제부

- 1998년 2월 재정경제원에서 개편된 재정경제부는 경제사회발전의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조세제도 및 관련정책의 수립, 금융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관리, 외환 및 외채 관리 정책의 수립,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의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재정경제부는 2006년 현재 장관 하에 복수의 차관과 소속기관으로 국제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등을 두고 있음. 그 외에 부서로 혁신인사기획관, 정책기획관, 홍보관리관,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개혁실무기획단, EITC추진기획단 등을 두고 있음.
- 재정경제부의 업무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증권, 보험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익에 관련되는 업무가 많으며,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중 기업체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7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국세심판원, 금융정부분석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업경제과, 국유재산과,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증권제도과, 보험제도과, 국제금융과 등은 각 산업의 구조개선과 기업의 투융자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있음.
  - 따라서 이들 부서에 근무하던 공직자와 관련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재정경제부의 업무 중 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은 두 번째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중 법령에 의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로 조세지출예산과, 관세제도과, 소비자정책과, 재정정보관리과,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이 해당됨.
  - 이들의 업무는 주로 농협, 수협, 축협, 한국은행 등의 지도감독 및 한국 소비자보호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같은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감독기관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해충돌이 예상됨.
- 한편 관리팀과, 회계제도과는 정부계약 및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이 관련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계약을 위해 영향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취업이나 고문,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업무들도 있는데,
  - 소득세제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소비세제과 등 세제실의 업무는 주로 세금제도를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것으로 이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할 경우 기업고객 유치를 통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업체인 자본금 50억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관료가 수행했던 업무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허용되고 있음.
  - 또한 종합정책과는 재정 및 금융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국책은행이나 산하기관에 취업할 경우 유리한 정책

결정이나 집행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경로는 주로 금융기관, 산하기관이나 국책은행, 대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볼 수 있음

- 2001년부터 2006년 10월 현재 재경부 4급 이상 퇴직자 55명 중 42명 (76.4%)이 재취업하였으며, 2006년에도 5명의 퇴직자는 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6. 12)

○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06. 12)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사례 1: 재경부 퇴직공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사례

- 금융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정경제부 관료 48명 중 19명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하였음.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을 감독해야 할 경제관료가 퇴직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경제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 사례 2: 재경부 퇴직공직자의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 재취업 사례

- 재경부는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총 14명으로 금융기관에 이어 가장 많았음. 경제관료의 산하기관으로의 이동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경영혁신이 아니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음.

### # 사례 3: 재경부 퇴직공직자의 기업체 재취업 사례

- 재경부 퇴직공직자 중 기업체로 취업한 사례는 총 48명으로 이 중 7명은 삼성(5명), 두산(1명), LG(1명) 등 대기업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경부 관료들은 대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함. 경제관료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퇴직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재직기간 동안 업계의 눈에 거슬리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등 정책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 사례 4: 재경부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재취업 사례

-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경제관료 중 재경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명이었음. 이들은 주로 재경부에서 법인세 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관료들로 법무법인의 매출을 좌우하는 기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취업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임.
  - 즉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여기에서 퇴직하면 다시 기업에 재취업해 이해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하기관으로 이들이 보내지는 이유는 인사적체 해소 때문이며, 기업 역시 퇴직 경제관료를 영입해 이권을 챙기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음.

<표 17> 재정경제부 퇴직 후 취업관련성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국세심판원	• 심판사건조사 및 조정	• 산하기관이나 국책은행 취업 또는 금융업에 취업 • 법무법인 취업 또는 자문	•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 • 경제관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영향력 행사 • 법무법인의 취업하여 기업고객의 유치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금융정보분석원	• 심사분석 및 과태료, 금융기관 피드백	• 금융기관(증권, 은행)에 취업 또는 자문	• 금융기관에 취업하여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 총괄 및 사후관리	• 대기업 등에 취직 또는 자문	• 대기업 등에 취직하여 공적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관리팀	• 용역계약 및 청사관리	• 용역관련 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	• 용역을 수주하거나 계약을 위해 로비하거나 영향력 행사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및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
조세지출예산과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입안 • 세무사의 관리감독	• 세무관련 협회나 회계법인에 취업 또는 자문	• 관련협회의 방패막이 역할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소득세제과	• 소득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법인세과	• 법인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기업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업관련 협회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입안이 이루어지도록 로비스트 역할	해당사항 없음
재산세과	•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에 관한 기획·입안	• 법무·회계법인 또는 기업관련 협회에 취업 또는 자문		
소비세제과	• 부가가치세, 주세 등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관세제도과	• 관세사의 지도감독	• 관세사 협회 취업 또는 자문	• 관세사 협회의 방패막이 역할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종합정책과	• 재정·금융 및 외환 등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 국책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취업 또는 자문	•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 행사	해당사항없음
소비자정책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 소비자보호원에 취업 또는 자문	• 소비자보호원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시트 역할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산업경제과	• 중소기업지원 및 제조업 및 농·임·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총괄·조정	•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에 취업 또는 자문	• 기업체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청탁하거나 압력행사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국고과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운영	• 금융기관 및 대기업에 취업 또는 자문	• 공공자금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에 압력 행사	해당사항없음
재정정보관리과	• 재정용자계획의 수립·집행 •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도감독	• 기업체 및 담배사업체에 취업 또는 자문	• 기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국유재산과	• 정부의 출자 및 주주권 행사 •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관리·처분 • 정부투자기관의 내부감사 및 회계제도 및 결산의 총괄	• 산하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임원으로 취업	• 감사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가관련 청탁 가능성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회계제도과	• 정부계약실적의 심사·분석 • 정부조달사업 관련 업무의 조정	• 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 역할	• 정부조달사업을 수주하도록 청탁하거나 압력행사 가능성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및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5호)
금융정책과	• 조폐공사업무 • 기업자금정책 및 수출입금융지원정책의 기획·조정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 유사금융에 대한 조사 •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 • 벤처기업에 취업 또는 자문	• 산하기관의 방패막이나 로비스트 역할 • 벤처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 행사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 • 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

담당부서	업무내용	이해충돌가능성 취업업체 및 활동	이해충돌내용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 령32조2항)
은행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정책수립 및 지급결제제도</li> <li>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업무</li> <li>산업합리화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운용</li> <li>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수립</li> <li>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및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정책수립</li> <li>농협, 수협, 축협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취업 또는 고문</li> <li>농협, 수협, 축협 등에 취업하거나 고문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위한 영향력 행사</li> <li>산하기관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li>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증권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투자신탁제도에 관한 정책수립</li> <li>유가증권발행 및 금융선물제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정책수립</li> <li>증권산업구조개선</li> <li>기업의 공개 및 상장 제도</li> <li>기업인수·합병·분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회사 및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자문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회사 및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보험제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업관련 기본정책수립</li> <li>보험산업 구조개선 정책수립</li> <li>예금보험공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업에 취업 또는 고문</li> <li>예금보험공사의 취업 또는 고문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위한 영향력 행사</li> <li>산하기관의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li>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6호)</li> </ul>
국제금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 정책의 수립</li> <li>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총괄·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고문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 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업무의 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7호)</li> </ul>

## 9. 소결론

- 여기서는 대법원과 여타 기관들로 분류하여 업무와의 이해충돌 관련성을 정리하였음.
- 먼저 대법원과 관련하여, 공윤법 대법원 규칙 제25조 5항에 나타나 있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대법원 각부서의 업무를 서로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공윤법 대법원 규칙 제25조 5항의 밀접한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 그 중 제25조 5항의 1호는 대법원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1.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표 18> 공윤법 대법원규칙(제25조 5항)과 각 부서의 관련업무 판단기준

관련업무 (공윤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재판부	등기호적국			재판사무국
		호적과	부동산 등기과	공탁사업 등기과	
1(사건심리·심판관련업무)	기업체 대상 각종 재판.				경매관련행정 업무. 재판절차상편 리제공.
2(공사, 물품구입)					
3(재산상 권리영향업무)	업무처리방식 에 따라 이해 충돌 발생		부동산 등기업 무 법무사에 관한 업무	공탁에 관한업무 상업등기에 관한 업무	경매관련행정 절차업무.
공윤 법시 행령 (제3 2조 2항)	1(재정보조제공업무)		등기 등 별 회 계 업무		
	2(인허가, 특허, 승인)				
	3(검사 및 감사업무)				
	4(조세관련업무)				
	5(공사, 물품구입)	공윤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2호와 동일			
	6(직접감독업무)		법무사에 관한 업무		
	7(재산상 권리영향업 무)	공윤법 대법원규칙 제25조5항 3호와 동일			
기타	인사	대법관회의 (판사 임명 동 의)			
	정책	대법관회의 (규칙 제 개정 등)			

- 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은 소관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공윤법 대법원규칙 제25조 5항 1호)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등기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공윤법 시행령(제32조2항)의 1호, 6호 등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대법원 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됨.

-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의결되는 인사(판사임명동의안), 정책(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미비로 이해충돌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대법원을 제외한 여타 기관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나타나 있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중앙부처의 업무를 서로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구체적으로 밀접한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나타난 7가지 취업과 밀접한 관련업무 이외에 업무도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기업체 및 비영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 기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의 권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 비영리법인(사립학교, 병원) 등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 이상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업무를 중앙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해석과, 법무팀, 선거상황팀, 정치자금과, 정치자금조사과, 감사팀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



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수사계, 강력계, 폭력계, 교통안전계 등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국세청은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국세청장 및 차장, 징세과, 부가 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1과, 세원정보과 등이 있었음.

<표 19> 중앙부처업무의 취업관련성

관련업무	중앙선관위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1(재정보조제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지방교육재정배분)</li> <li>정책총괄과 (누리사업추진)</li> <li>평가지원과 (전문대학 재정지원)</li> <li>학술진흥과 (연구비조성지원 및 BK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입지정책팀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li> </ul>
2(인허가, 특허,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행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만족센터 (개발행위의 허가)</li> <li>철도운영팀 (철도사업 면허 및 각종 인허가)</li> <li>도시교통팀 (여객자동차운수단체 공제사업 허가)</li> <li>대중교통팀 (시의고속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인면허)</li> </ul>
3(검사 및 감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감사담당관실 (사립고등교육기관 행정감사)</li> </ul>	
4(조세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장 및 차장 (업무총괄)</li> <li>징세과 (국세징수총괄)</li> <li>부가가치세과 (부가세관리)</li> <li>소득세과 (소득세신고관리)</li> <li>법인세과 (법인세 신고 및 관리)</li> <li>재산세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업무)</li> <li>조사1과 (법인납세자관리)</li> <li>세원정보과 (탈세자료관리)</li> </ul>		
5(공사, 물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과 (공사, 제조, 물품의 구매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관리과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과 (물품구매조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지원팀 (물품구매조달)</li> <li>시설기획담당관실 (각급학교 시설설비 계획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무팀 (학술연구용역/기술용역/정부대행사업 계약)</li> </ul>

관련업무	중앙선관위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6(직접감독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총장 • 차장 (업무총괄)</li> <li>• 총괄기획관실 (선거경비에 관한 업무)</li> <li>• 조직행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li> <li>• 조사총괄과 (선거위반행위 감시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세과 (주류면허업체 관리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기획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지도감독)</li> <li>• 건설관리팀 (건설감리협회 지도감독 및 건설현장 점검)</li> <li>• 항공정책팀 (한국공항공사 주주권 행사)</li> <li>• 철도건설팀 (한국철도건설기술협회,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 등 비영리법인 지도감독)</li> <li>• 도로정책팀 (도로교통협회, 도로공사 지도감독)</li> <li>• 수자원정책팀 (수자원공사 지도감독)</li> <li>• 도시계획팀 (감정평가업체 지도감독)</li> <li>• 주거복지지원팀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지도감독)</li> <li>• 토지관리팀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li> <li>• 부동산평가팀 (한국감정원 지도감독)</li> <li>• 도시교통팀 (공제조합 지도감독)</li> <li>• 교통안전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안전공단 지도감독)</li> <li>• 자동차팀 (자동차정비업 및 검사대행자 지도감독)</li> <li>• 건설경제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지도감독)</li> </ul>
7(재산상 권리영향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세과 (금융자산 및 신용정보조회)</li> <li>• 소득세과 (면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택팀 (택지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li> <li>• 주거환경팀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li> <li>• 신도시기획팀 (신도시 개발사업)</li> <li>• 택지관리팀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지구 지정)</li> </ul>

관련업무	중앙선관위	경찰청	국세청	교육부	건교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해석과 (선거유권해석)</li> <li>• 법무팀 (선거소송사무)</li> <li>• 선거상황팀 (선거관련 사건 사고처리)</li> <li>• 정치자금과 (정치자금회계사무)</li> <li>• 정치자금조사과(선거비용 수입지출 조사 및 국고보조금 조사)</li> <li>• 감사팀 (지방선거경비출납 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계 (형사사건수사)</li> <li>• 강력계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수사)</li> <li>• 폭력계 (조직, 폭력범죄 등 수사)</li> <li>• 교통안전계 (교통사고 재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규과 (조세법령해석 및 처리)</li> </ul>		
기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의 권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거래관리과 (투기조장업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조정과 (민간단체와 공동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팀 (해외공사수주지원)</li> <li>• 건설환경팀 (대형공사입찰방법 및 건설기술 용역관리 등)</li> <li>• 물류산업팀 (화물휴게소 및 차고지 건설지원)</li> <li>• 물류정책팀 (중합물류업 인증)</li> <li>• 고속철도팀 (역세권개발사업)</li> <li>• 공항개발팀 (공항 민자유치사업 선정 사업 투자우선순위결정)</li> <li>• 도로관리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li> <li>• 지역발전정책팀 (개발촉진지구지정)</li> <li>• 주택건설팀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li> </ul>
비영리법인(사립학교, 병원) 등에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정책과(법인 예결산 및 운영지원)</li> <li>• 대학정책과 (국립대학병원관리 및 사립법인 재산관리)</li> </ul>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제25조 5항 1호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정책총괄과, 평가지원과, 학술진흥과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전문대학정책과, 대학정책과 등이 있어 이들의 퇴직후 취업에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는 가장 많은 부서가 퇴직후 취업에 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가 안전기획팀, 건설관리팀, 항공정책팀 등 14개 부서로 가장 많았음.

- 이들 부서는 정부유관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건설교통부는 공직자윤리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 권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팀, 건설환경팀, 물류산업팀 등 9개 부서는 퇴직후 취업에 있어 이해충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이러한 중앙부처의 업무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취업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비상근 형태의 자문이나 고문 활동도 취업의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6호의 경우 영리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 관련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제한 예외 협회에 대한 규정 또한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 하는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에 해당하지 않은 밀접한 관련 업무 중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업무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업체 및 비영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조사·수사 및 재판과 관계되는 업무”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32조 2항 7호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판단 함에 있어서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유관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재산상의 유무형의 이익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함.

## 제5장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취업의 개념

#### 1. 현황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인지 여부를 취업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범위 : ‘0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지침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보험 가입대상자’를 말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 후 특정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만을 제한할 뿐, 취업 이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로비 및 자문활동, 기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향력행사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 규제하지 못함.

#### 2. 문제점

- 우선 취업의 정의가 불분명해 법적용시 이를 협소하게 해석·적용할 수

밖에 없음. 지침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가로막는 로비활동, 영향력 행사 행위 등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 할 수 없음.

- 현행과 같이 취업을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대상자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만을 취업으로 볼 경우 자문, 고문 등 비상근 근로,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대상 제외자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 따라서 일정기간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문, 비상근 고문과 같은 로비나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임시 혹은 비정규의 형태의 고용 등 사실상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로비행위, 영향력의 행사, 대리행위는 현행 법률로는 규제가 불가능함.
- 이해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고문이나 자문활동이 주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댓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문이나 자문역할이라 하더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전○○ 감사원장, 이○○ 전금감위장, 강○○ 의원이 국민은행의 고문·자문역할을 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개월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3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은행 직장가입자가 아닌 관계로 ‘취업제한 위반여부’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05. 10. 이영순 의원주재 토론회)

※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한 이○○ 전 경제부총리와 최○○ 전 국세심판원장은 월 3천 5백만원씩 연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으며

· 이○○, 전○○ 전 서울국세청장은 월 3천 4백만원, 이○○ 전 금감위원장은 2천 5백만원을 받았음(’06. 11. 24. SBS 뉴스)

○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이외에도 ‘취업예정자의 취업가능여부 확인요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비상근)자문·고문활동 전에 확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여부 파악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임.

### 3. 개선방안

○ 위에서 살펴보듯 취업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상당한 난점이 있음(취업이 다수의 법령에서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찾을 수 없음, 아울러 판례에서도 취업의 범위와 개념이 구체화된 사례를 찾기 어려움)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 혹은 행위의 내용에 의해 취업여부를 판단, 적용

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취업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판례에서는 취업 자체에 대한 판례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계약 등의 형식과 관계없는 실질적인 근로의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현행 지침보다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1. 28. 선고)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즉 취업을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해 실질적인 활동의 내용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이와 관련, 취업대상자는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과 고용계약(현행법률상의 '취업')외에도 도급, 용역계약 등 대가를 수반한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취업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 취업제한규정의 위반여부를 감독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이와 같이 취업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서 적용할 경우 퇴직공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목적 정당성의 원칙),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은 의도하는 입법목적에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하고(방법 적정성의 원칙),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여러 수단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제한 최소성의 원칙), 기본권의 침해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衡量하였을 때, 양자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임(법익균형성의 원칙).
  
-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퇴직후 취업 제한규정 자체가 취업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또한 취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제한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규정의 실효성을 상화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님. 이미 공직자윤리법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로 그 요건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 - 을 엄격히 정해 기본권 제한방법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이처럼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단순히 취업의 개념과 정의를 구체화 해 입법목적에 맞도록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나아가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 등을 이용해 재직 중 근무하였던 관련부서의 현직 공무원을 접촉 또는 연락해 법규의 제정이나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규제되어야 함.
- 퇴직공직자가 전화 혹은 대면접촉을 통해 재직 중 근무하였던 부서의 현직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을 주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돼 정부의 정책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당장의 대가관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활동 그 자체로 제한되어야 함. 다만 이 경우 퇴직공직자들의 활동을 무조건 제한한 것이 아니라 △퇴직전 3년간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취업과 달리 로비행위는 사전규제 혹은 확인이 불가능 하며, 따라서 준칙조향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후 적발·처벌 방식을 취함.
- 다만 이 같은 제재가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로비활동의 순기능까지를 모두 도외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보완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현행 취업제한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승인규정을 둔 이유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사익추구의 가능성보다 공익적 기여가 더 클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이 같은 취지에서 로비활동 역시 그 긍정적 측면을 활용, 보장하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록케 하고 등록된 자에 한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한 활동까지를 모두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퇴직공직자의 활동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활동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헌법상의 원칙(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개선방안 : 취업은 물론 퇴직 후 특정행위까지를 제한

- “퇴직공직자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취업 등의 개념을 정의함

현행	개정안
없음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기업체 등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

- 즉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직무범위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자신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 인·허가, 계약, 거래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관련 부서의 공무원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일정기간(2년)동안 금지함. 단 이같은 로비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경우는 허용.

- 퇴직전 부서를 상대로 한 전관예우, 로비활동의 문제를 상당부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 비춰볼 때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제2절 취업 및 활동 제한 기간의 적정성 검토

### 1. 현황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제17조제2항),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업체와 퇴직전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전 3년 이내 소속부서의 업무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업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함.
  - 퇴직일 3년 전에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기관에 근무토록 조치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 공직자를 퇴직전 3년 전에 취업예정업체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교육원, 연수원 등)에 전보 배치하여 근무케 한 후 퇴직후 직무관련업체에 취업하는 현행법상 전혀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한기간의 설정은 재직 중 취득한 정보 및 인맥의 가치가 퇴직후 2년간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2. 문제점

- 현행 2년의 제한기간은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가치 혹은 대인관계의 가치가 2년간은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이지만 재직시 취득한 정보의 질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치의 존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관예우, 로비활동의 가능성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이 같은 점에 비취 현행 취업제한 기간과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할 이유가 있으나 직급, 특정사안의 개입정도를 구분해 입법화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같은 제한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타법률 및 외국의 입법례에 비취보더라도 현행보다 제한기간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 관련 사례

- 유사한 입법취지를 가진 검찰총장의 퇴임후 법무부장관 취임제한, 퇴임후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규정 등 통상 2년의 자격제한 기간을 두도록 한 바 있음.
- 미국, 캐나다 등 퇴직후 취업 혹은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에서도 그 제한기간은 통상 1년 혹은 2년에 머뭄.

- 다만 퇴직공직자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재직 시 알게 된 정책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부의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동안 이의 활용을 금지해야 함.



- 비록 형법 등 타법률이 정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경우 엄격한 구성요건을 필요함. 부동산 개발, 투자 예정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재직 중 취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윤리차원에서 이의 활용을 금할 명문의 규정을 뒤야 함.

### 3. 개선방안

-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의 논의가 가능함. 즉 퇴직전 업무관련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년의 기준과,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인 2년에 대한 각각의 논의가 필요함.

#### ① 퇴직전 담당업무의 연관성 판단기간의 강화

- 먼저 퇴직전 담당업무(3년)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동안 많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전에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후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임. 이미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퇴직전 5년간의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주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부서 혹은

담당업무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고려한 판단을 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님.

## ② 취업제한 기간의 강화

○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취업 혹은 활동제한 기간을 특정사안의 개입정도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인 취업제한 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할 수 있음. 즉 재직 중 자신이 직접 관여하였던 업무와 관련해 관련부서를 상대로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기간과 같이 2년 동안 제한하도록 함.

○ 혹은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취득한 정책 등에 관한 정보의 비밀 가치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활용을 금지토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은 현행과 같은 2년이 아니라 1년에서부터 영구적인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여기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으로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1년의 제한 사유 :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혹은 2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 2년의 제한 사유 :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

○ 참고로, 독일·프랑스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할 수 없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간접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혹은 2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 4.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 퇴직전에 특정업무에 직접 관련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을 영구제한
- 타인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전 3년 이내의 직무 책임범위안에 들었던 사실에 관해 해당부처나 기관소속 공무원과 접촉을 2년간 금지
- 퇴직 후 1년동안 자신의 전 소속기관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대리활동을 금지

##### (2) 캐나다

- 퇴직공직자는 자신이 근무하였거나 퇴직 1년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맺었던 부서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를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자문을 해 주어서는 안됨

### 제3절 취업제한 대상 등의 재조정

#### 1. 현황

- 현행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 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이에 해당함.

※ 2006년도 적용대상 영리사기업체는 모두 2,919개에 달함.(행정자치부 관보.2006.12.29.)

- 또한 일부 협회의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협회의 범위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임. 단 다음과 같은 협회는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협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2. 문제점

-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제외 문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의 선정 기준의 적절성, 그리고 취업제한대상 협회관련 예외조항의 존치 문제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 1)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외의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영리 사기업체만을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은 제한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음. 즉 비영리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직 퇴직후 재취업이 가능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해서 관련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관련 행정기관들의 지도,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결합되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국가청렴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2005년의 기간동안, 재경부, 건교부 등 11개 부처 1-3급 공무원 84명이 명예퇴직후 수일 내지는 수개월 이내에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을 하였음. 특히 어떤 퇴직 공무원은 퇴직한 당일 바로 산하기관의 감사로 취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에 공정한 관계의 형성이 불가능함은 물론, 재취업한 공무원의 역할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의 기간동안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 등 6개 부처의 3급 이상 퇴직공무

원 194명중, 취업자는 73%인 142명이며, 이중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경우는 27%인 42건, 정부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는 17%인 27건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원에서 퇴직한 163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24명이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투자기관 등 이해충돌이 심각한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YTN 2006년 10월 26일 보도 인용).

## 2) 취업제한대상 영리 사기업체 선정기준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의 선정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로 제시되어 있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 그러나 현행 기준은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상의 관리적 편리성에 근거한 임시방편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기준과 공직자윤리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않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들의 경우, 자료에 따르면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자본금은 대부분 50억원 미만이어서 취업에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임.
- 실제로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즉 국내 대형 회계법인 10개중 8개가 외형거래액에서 150억

원을 초과하였지만,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은 삼일과 한영 2개 법인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행자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법무법인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법무법인이 상대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이들 법인으로 퇴직후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것임. 이로 인하여 어느 영역보다도 퇴직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바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한 재취업이라고 할 수 있음.

### 3) 취업제한 대상 협회 관련 예외조항의 문제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따라서 비록 영리사기업체의 모임인 협회라 하더라도, 공공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혹은 임원을 국가기관 등이 승인 혹은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혹은 유관단체라 하더라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하물며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는 협회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혹은 수행할수 있는) 협회의 사례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0> 정부 업무 위탁수행하는 협회 및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협회명	정부위탁사업	퇴직공직자 재취업
은행연합회	재정경제부는 은행연합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	전 금감위 부위원장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대행 위임사무(손해보험설계사 등록 업무), 보험관련 기타 업무 위임	전 금감원 보험감독국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회원에 대한 검사업무 등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
건설공제조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전 건교부 차관보, 감사담당관, 기술안전국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회사별 감리용역 실적관리, 감리원 경력관리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종합관리, 감리원변경 등록 등의 업무	전 건교부 국토정책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를 규정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한건설협회	법령에 의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규정	건 건교부 심의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위탁 업무	전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업관련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및 정부의 자문 업무 규정	건 건교부 건설경제과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신규등록 접수·등록증발급 및 변경사항 접수·처리와 주택건설실적 확인등 주택사업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	건 건교부 부이사관
한국양묘협회	산림청 지시에 따라 좋은 양묘종자를 채취 공급업무. 산림청장이 협조요청하는 종묘관련 업무를 수행	-
무역협회	정부 수임업무(남북경협 업무 등)	전 산자부장관, 전 중소기업청장

자료 : 참여연대 내부자료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 자료 활용 정리

### 3. 개선방안<sup>5)</sup>

#### (1)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기준의 하향조정

- 원칙적으로 기업의 규모에 의해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에 따라 사안별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모든 기업체 취업에 대해 직무관련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 문제와 비록 이해충돌에 따른 공익의 손상 혹은 사익 추구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이해충돌이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와 범위의 현행보다 낮추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임.
-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취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영향력 행사에 따른 사익의 크기와 비교한 공익 손상의 심대함, 비공식적 거래나 유착가능성의 정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행정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임.
- 이중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용실태일 것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후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

5)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공직유관단체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미국 등의 경우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등 행정기관과 공기업간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논의보다는 오히려 공기업 퇴직자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받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수가 100여명에 불과함. 따라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늘리는 데 따른 행정력 증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① 개선방안 1 :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강화**

- 우선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가장 큰 부분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 혹은 로비활동에 있으며, 이는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공급, 용역, 공사계약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취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예시적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연간 계약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u>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u>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u>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등록된 업체 혹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다.</u>

**② 개선방안 2 : 자본금 혹은 외형거래액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제한**

- 한편 현재와 같이 기업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취업제한대상

업체의 범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어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 퇴색한다는 점을 고려해 두 기준 중 한가지만을 충족시키는 - 자본금 10억원~50억원 이상 -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두가지 기준의 규모를 하향조정 - 자본금 10억원, 외형거래액 100억원 -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업무관련 해당 군출신 예비역 고급장교를 고문 등 임원으로 영입하여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무기중개업체와 같은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취업 후 전직 관련부서의 공직자와의 접촉 등을 금지하는 활동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혹은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 (2) 취업제한 예외 협회 조항 삭제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부서의 업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협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그 범위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

하고 있는 협회로 정하고 별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제외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는 협회의 경우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공공사업의 수행이나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혹은 단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적음.
- 하지만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예외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익법인은 법률에 의해 임원 선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법인과 민법상 법인과의 경계가 애매모호할뿐더러 공익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의로 정관에 공익법인설립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거나 임원 선임시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이 같은 협회의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훨씬 높을뿐더러 개별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의 집합체인 협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어 보임.
- 또한 이 같은 취업제한의 예외협회조항을 법률의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두고 있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함. 법률은 원칙적으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 영리사기업체 혹은 협회의 범위만을 정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인데도 취업제한의 예외 협회까지를 임의로, 그것도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음. 이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사유만을 정한 것보다도 다른 것임.

- 설령 예외조항을 둔 것이 입법취지에 비취 이해충돌에 따른 사익추구가 능성보다 그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으나,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취업을 승인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개별적 승인을 받아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하다 할 것임.

**① 개선방안 1 : 취업제한 예외협회의 범위 축소**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혹은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를 취업제한 예외협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②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②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현행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혹은 선임하는 협

회를 예외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을 국가기관 등이 임명하는 것과 이해충돌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공공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협회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모두 추구하는 입장이 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단 기존과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까지 모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개선방안 2 : 취업제한 예외협회 규정의 삭제**

- 기본적으로 취업제한 예외협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즉 넓게 보면,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태여 예외조항을 둘 필요는 없음.

현행	개정안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u>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u> <u>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u>	제33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 때문에 현행 예외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대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협회에 의한 사익의 추구하고 공익의 수행**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협회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만 고지대상은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집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정부사업을 위탁하여 처리한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다음이 있음.
- 즉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경우, 주택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지난 1988년 6월 정부권한위탁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신규등록 접수·등록증발급 및 변경사항 접수·처리와 주택건설실적 확인등 주택사업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들의 협회이지만, 정관 제5조(사업)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지난 2006년 9월 14일 개정되었음.



## 제4절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 1. 현황

○ 현행법상 공직자가 퇴직후 재취업을 함에 있어서 취업이 무조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즉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퇴직 공직자가 퇴직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6).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6) 일본의 경우,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제2조에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인허가 등(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을 말한다)을 하는 사무,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을 한 사업자 등 또는 개인 및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또는 특정 개인
  - 보조금 등을 교부하는 사무, 해당 보조금 등(보조금 등을 직접적으로 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간접보조금 등을 포함)의 교부를 받아 교부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특정개인,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을 한 사업자 또는 특정개인 및 보조금등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 출입검사, 감사 또는 또는 감찰 등을 받는 사업자 또는 특정개인
  - 불이익처분(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불이익처분)을 하는 사무, 불이익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 불이익처분의 수신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 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사무, 행정지도에 의해 현실적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받는 사업자 등 또는 특정개인
  - 내각부 또는 각성이 소장하는 사무 중 사업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무, 사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자 등
  - 국가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 혹은 회계법에 규정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 또는 이들 계약에 상당하는 특정법인행정법인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무, 이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 이들 계약의 신청을 한사업자 등 및 이들 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것이 명백한 사업자 등
  - 재정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무, 당해조정을 받는 국가기관.
  -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급의 정수설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무, 설정 또는 개정을 받는 국가기관
  - 총무성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설치, 증감 및 폐지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무, 심사를 받는 국가기관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공운법 제17조 2항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를 개별 규칙에 일임하고 있음.

## 2. 문제점

### 1) 집행업무 중심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들은 대부분 집행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직접적인 인허가, 특허, 계약, 조세부과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업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는 주로 중간 관리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퇴직후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중에서 상당수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즉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은 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등록의무자는 대부분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 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직무상 업무관련성의 내용들은 오히려 중간 관리자 이상인 등록의무자 보다는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중하위직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상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 특히 이들 기준들과 비교하여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정책, 감사 등은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음으로서 업무관련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물론 이해충돌은 특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가장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정조직구조와 문화상 특정 업무의 직접적인 수행은 물론 간접적인 연관성, 혹은 인사, 정책, 예산, 감사 등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여도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 2)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주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누락

-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들은 규칙 등에 위임되어 있음. 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업무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그리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규칙은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기준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경우 아직까지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의 업무 연관성 판단과 관련한 기준들이 누락되어 있음. 즉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법관, 검사, 경찰, 의원 등 다양한 공직자를 취업제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업무 특성을 반영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기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국회	-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대법원	- <u>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u>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헌법재판소	- <u>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u>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 관련 규정 없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 경우 국회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우 일부 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관련조항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임.
-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부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이 극히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 할 수 있음.

### 3) 포괄적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문제

-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경우는 물론 각 기관에서 제정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중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7호에서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재산상의 권리”와 “직접적인”, 그리고 “상당한” 이라고 제한하고 있어서,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해충돌, 간접적인 이해충돌은 적용되기 어렵도록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음. 즉 현행 법에서는 이해충돌의 적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3. 개선방안

#### 1)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법인 관련기준 신설

-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감독권 관련 업무 중심으로 정의된 별도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정립·적용함.
- 예를 들어서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음.

- 법령상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업무

**2) 정책업무와 관련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신설·보완**

- 먼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정책업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업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u>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책의 기획·결정·집행 업무</u> 8.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혹은 현행 포괄 조항(제32조제2항7호)을 그대로 유지하되, 각급기관별로 정책업무가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다만 아직까지 많은 기관들이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한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3)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보완

-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사실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나 혹은 기관 전체적으로 특정한 분야(혹은 분야의 기관들)와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감안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다만 현행 규정은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전체가 특정한 분야와 포괄적으로 이해관계에 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내에서의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에 처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감사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피감대상 기관으로의 재취업
  - 선거관리 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선거관련 정당으로의 재취업
  - 기업의 공정거래 감시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기업으로의 재취업
  - 금융감독 관련 기관의 퇴직 공무원의 금융기관으로의 재취업
  - 기업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관련 기업 또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

#### 4) 포괄적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의 보완

-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 7호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조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권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해충돌에 있어서의 이해 혹은 유형의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이익과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현행	개정안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u>재산상의 권리</u> 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①(생략)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6 (생략)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u>이익과 권리에</u>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제6장 외국의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의 경우와 같이 퇴직후 취업에 있어서 취업의 개념을 통상적 급여의 수수 등과 관련하여 좁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자문 등 다양한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것임. 미국의 영국의 관련 법제도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내용	미국	캐나다
근거법	정부윤리법	공무원의 이해충돌 및 퇴직후에 관한 규정
이해충돌의 적용 내용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대리행위 등의 제한	퇴직후 재직중 입장에 반하여 기업, 단체 등을 대신하는 행동의 제한
이해충돌활동 제한기간	1년-영구적 제한까지 영역 및 내용에 따라서 다양	1년이 기본이며, 장관의 경우 2년이 적용됨.
적용 대상	행정부 공무원, 의원, 의회직원 등	
이해충돌의 판단 근거	개인적으로 관여한 사안 및 상당한 이해관계의 존재 등 포괄적 규정	자신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업무
처벌	1년-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퇴직전 적용 규정		퇴직전 이해충돌 야기하는 외부 취업의 제안에 대한 보고 의무
제한기간의 단축		윤리감독관의 판단에 의하여 기간 제한 가능
재직공직자에 대한 적용		퇴직후 규정 적용을 받는 퇴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윤리감독관에게 보고 의무

## 1. 미국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1989 윤리개혁법”에 의하여 퇴직후 활동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즉 동법에서는 퇴직후 활동규제와 관련하여, 미국법전 18권의 207조를 다음에 정리하는 바와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들은 지난 199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음.

○ 그리고 동규정의 위반시, 미국법전 18권 216조에 따라서 처벌(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part 1 - crimes / chapter 11-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sec 216. penalties and injunctions)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법전 18권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1) 행정부와 기타 부서의 관료와 피고용인에 대한 제한

○ 영구적 제한과 2년의 제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1) 특정 사안의 대리행위(representation)에 관한 영구적 제한

○ 미합중국의 행정부(미합중국의 독립 기관 포함)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관료 및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 포함)이 미합중국과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고용이나 근무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과 관련하여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원 또는 군법정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를 제외한) 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접근 할 경우 이장의 21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A)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 (B) 그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관료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개입되었고,
- (C)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이 가담 시점에 개입되었을 경우

(2) 공무 수행과 관련된 특별 사안에 대한 2년 제한

- 미합중국이나 콜롬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근무가 종료된 지 2년 이내이내 (1)절에 따라 계약을 받는 자가 고의적으로, 미합중국이나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피고용인 또는 관료에게 다음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 특별지구 제외)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접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A)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
- (B) 개인이 관료 또는 피고용인으로써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관여한 사안;
- (C) 미결 중인 시점에 특정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개입된 사안;

(3) 제한의 상세설명. - (1)절과 (2)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 (A) 미합중국의 행정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독립 기관 포함)이 특정인을 대신하여 미합중국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또는 미합중국이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 그리고
- (B)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특정인을 대신하여 콜롬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접근을 한 경우, 또는 콜롬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인

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 2) 지원과 조언에 대한 1년간의 제한

- 앞서의 1)의 (1)의 제한을 받는 미합중국 행정부의 전직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나 입법부의 전직 관료이거나 피고용인, 전직 의원 중 미합중국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의 1년 이전에 미합중국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상당 부분 개입하고 그러한 무역 또는 조약 교섭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위치에 있었으며, 그 정보가 5장의552조에 의거하여 누설이 면제되고, 그 면제를 해당 부 또는 기관이 지정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 사람이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미합중국을 제외한) 진행중인 무역 또는 조약 교섭과 관련하여 미합중국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특정인을 돕거나, 대표하거나, 충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 부조를 위반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여기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 “무역교섭”은 대통령이 무역과 경쟁에 관한 총괄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1102조에 따른 무역협정을 위한 교섭을 의미하며,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한 행동은 제외된다.
- (B)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을 말하는데 이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행정부와 독립기관의 고위급 관료에 대한 1년 제한

- 앞부분의 1)과 2)에서 명시한 제한에 추가하여 미합중국 행정부(독립 기관 포함)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 정부의 특별 피고용인을 포함하여)이면

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미합중국 제외) 특정인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의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전 이내 그가 근무한 부 또는 기관의 관료 또는 직원에게 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접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위의 제한은 고용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하일 경우에 정부 특별 피고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서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윤리 사무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 직책에 대한 제한이 부 또는 기관이 그 직책을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고충을 초래하고,
  - (ii) 제한을 철회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낳지 않을 경우.

#### 4) 행정부와 독립 기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한

- 앞의 10, 2)의 제한 사항과 더불어—
    - (A) 미합중국의 부통령의 직책에 있는 자,
    - (B) 미합중국(독립기관 포함)의 행정부 내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 Schedule) I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거나, 대통령실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 Schedule) II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자, 또는
    - (C) 대통령이 3장 105조(a)(2)(A)에 따라 고용을 하거나 부통령이 3장 106조(a)(1)(A)에 따라 고용한 자,
- 그리고 그 직책에서의 임무가 종료된지 1년 후 미합중국 행정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2)에서 설명한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 접근해서는 안되는 사람 - (1)절의 (A), (B) 와 (C)에서 설명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문제시되는 사람( I에서 언급했듯이)은 다음과 같다

(A) 미합중국 정부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전 이내 근무했던 부 또는 기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 또한

(B) 5장의 5312, 5313, 5314, 5315 또는 5316조에 기재된 행정부 직책에 임명된 자.

#### 5) 국회의원과 입법부 관료 및 피고용인에 대한 제한

○ 국회의원이거나 상하원에 피선된 관료이자 의원직을 떠난 지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 또는 (C)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상하원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관료 또는 피고용인, 그리고 의회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

-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피선 관료가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근무지였던 국회의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다.

○ 의원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이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A)에서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피고용인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 (i) 피고용인의 고용주였던 상하원 의원; 또한
- (ii) 그 상하원 의원의 모든 피고용인.

○ 위원회 직원(committee staff)으로서, 의회 위원회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제외)의회 의원,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회의 피고용인 또는 관계 종료 시점의 전해의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이 조항의 조216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의회 지도부(leadership staff)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제외) 의회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 (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전직 피고용인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i) 하원의 지도부의 전직 피고용인의 경우 하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하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또한

(ii) 상원의 지도부의 전직 피고용인의 경우 상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상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 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그 사무국의 관료또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6) 처벌 및 금지 명령(18 U.S.C. §216)

○ (a)조 203, 204, 205, 207, 208 또는 209에 따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금형 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2) 위반 행위에 계획적으로 가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 법무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해당 지방 법원에서 203, 204, 205, 207, 208 또는 209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여 위반 행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각 위반 사항에 대해 \$50,000이하의 민사처벌(civil penalty),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댓가로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벌금 중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부조에 따른 민사처벌(civil penalty)의 부과는 미합중국 또는 특정인에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타 형사 또는 민사상의 법령, 관습법, 또는 행정 교정법(administrative remedy)를 배제하지 않는다.



## 2.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비슷하게 비교적 정교하게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하여 퇴직후 활동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으로서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Employment Code for Public Office Holders”(2004년 현재)가 있음.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캐나다에서의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함.

###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목적과 원칙

- 동법 part 1(목적과 원칙)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이해충돌 및 퇴직후 윤리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4개의 목적중 (d)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강령의 목적은...다음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정부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익과 공적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하게 되는 공익에 있어서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제시된 11개의 원칙 중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익 : 공직자는 이 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활동에 의하여 특별히 그리고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익을 가져서는 안 된다,
- 공익 : 따라서, 공직 임용에 있어서, 공직자는 발생하는 실질적, 잠재적, 의견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사익을 제시

(arrange)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갈등이 공직자의 사익과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사이에 발생하면, 그 갈등들은 공익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퇴직후(post-employment) : 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후에, 자신의 이전의 공직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행동(act)해서는 안된다.

## 2) 퇴직후 준수규정

- 동규정의 Part 3에서는 공직자가 퇴직후 준수해야 할 규정 (post-employment compliance measures)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음

### ◇ 공직을 떠나기 전에 적용되는 내용

- (1) 공직자는 외부 고용계획이나 제안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의 추구가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 (2) 공직자는 공직자클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외부고용의 제안에 대해서 윤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3) 외부 고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공직자는 즉각 서면으로 자신의 감독자는 물론 윤리감독관에게 그 제안의 수용을 알려야 한다. 공직자가 미래의 고용주와의 중요한 공식적 업무관계에 처해있다고 윤리감독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에, 공직자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4) 공직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안 수용을 또한 알려야 한다.
  - 장관이나 수상의 경우
  - 추밀원 서기장이나 부기관장의 경우
  - 각 부의 상근직 공무원들, 각 위원회의 상근직 관리자

- 의회 사무처 직원들

◇ 공직을 떠난 후에-금지되는 활동

(1) 퇴직 공무원은 정부가 한 당사자가 되는 특정한 지속적인 처리, 거래, 협상 등에 연계되어 있는 특정인, 상업주체, 협회나 단체를 대신하여 혹은 위한 행동을 함으로서 입장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2) 퇴직 공무원은 자신의 고객에게 자신이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혹은 자신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의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은 활용할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여 조언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제한과 제한의 단축 등

○ 2년 기간이 적용되는 장관을 제외하고, 본 규정 29조에 속하는 퇴직 공무원들은 공직을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다음을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1) 공직을 떠나기 1년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공적으로 처리하였던 업무와 관련되는 자리에 임용되는 것이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

(2) (a) 퇴직전 1년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되는 일에 대한 대표 혹은 보상에 대한 것

(b) 기타

○ 공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윤리감독관을 제한을 단축 혹은 면제할 수 있

음. 2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한의 단축 혹은 면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감독관은 면제나 단축으로 인한 공익이 제한으로 인한 공익보다 우월한지를 결정하여야 함. 고려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함.

- (a) 공직에서 공직자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던 상황
- (b) 공직자나 퇴직 공직자의 일반적인 임용 기대
- (c) 공직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정부에 대한 중요성 정도
- (d) 공직자가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서 사부문으로의 빠른 이동의 소망성
- (e) 새로운 고용주가 퇴직 공직자를 고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당한 이익의 정도
- (f) 퇴직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갖고 있었던 권위나 영향력 정도
- (g) 다른 사례의 처리예

#### 4) 기타

- 분리 협약(exit arrangement)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공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윤리감독관은 이들에게 퇴직후 준수규정에 대해서 잘 알려주어야 함을 의미함.
- 그리고 퇴직후 준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퇴직 공직자와 공식적 거래를 해야 하는 공무원은 윤리감독관에게 이러한 거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보고를 받은 윤리감독관은 즉각 퇴직 공직자가 퇴직후 준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은 거래에 있어서 퇴직 공직자 준수규정 하에 공직자와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됨.

- 캐나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장관의 경우 2년임. 퇴직 전 1년전의 직접적이고 중요한(direct and significant official dealings) 공적 거래와 관련된 활동(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 활동 포함)을 제한하고 있음.

### 3. 호주

- 호주의 경우,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규정이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등 관련법률들에 되어 있지 않음. 때문에 공직 퇴직후 적용 되는 일정기간의 '냉각기(cooling-off)"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공직을 떠난 후, 취업 등을 통하여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폭로 하거나 혹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존재함. 때문에 비록 퇴직후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취업에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련 정보의 노출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퇴직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공직과 사기업간의 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음. 그렇지만 공직 사임후 사기업에 취업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아직까지도 발전국가적 속성을 상당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함.
- 때문에 공직자가 어떠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고 또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공직윤리는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됨. 특히 최근 들어와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신뢰성, 투명성은 곧 윤리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의 하나가 바로 이해충돌의 회피라고 할 수 있음. 공직윤리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충돌에 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임.
- 이해충돌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점은 최근까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였지만, 어느 이해충돌의 문제보다도 공직윤리의 확보와 국민신뢰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상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 특히 기존의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근간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의 문제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과 같은 퇴직후 “취업”의 제한이 아닌 “활동”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충돌은 취업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임.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직자의 취업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현행과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매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음. 즉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매년 고시해야 하지만, 활동으로 제한할 경우 구태여 이와 같은 대상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또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음. 특히 실무자 중심으로 직무관련성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상대적으로 중상위 직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이해충돌의 발생은 직급과 상관없이, 그리고 열거된 직무와 상관없이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규정으로 확대하는 것 필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이 강화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12월 현재 271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시군구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시군구는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비록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



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의 기구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에서 제시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방안도 이와 같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될 수 있을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참고] 미국 윤리개혁법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18U.S.C. §207 전직관료, 피고용인 및 입사법부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제한**

**(a) 행정부와 기타 부서의 관료와 피고용인에 대한 제한**

(1) 특정 사안의 대리행위(representation)에 관한 영구적 제한

미합중국의 행정부(미합중국의 독립 기관 포함)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관료 및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 포함)이 미합중국과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고용이나 근무가 종료된 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과 관련하여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원 또는 군법정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를 제외한) 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접근 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A) 미합중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 (B) 그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관료 또는 피고용인으로서 개입되었고,
- (C)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이 가담 시점에 개입되었을 때이다.

(2) 공무 수행과 관련된 특별 사안에 대한 2년 제한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의 근무가 종료된 지 2년 이내이

자 (1)절에 따라 제약을 받는 자가 고의적으로, 미합중국이나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피고용인 또는 관료에게 다음의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지구 제외)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접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 (A) 미합중국 또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
- (B) 개인이 관료 또는 피고용인으로써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관여한 사안;
- (C) 미결 중인 시점에 특정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개입된 사안;

(3) 제한의 상세설명.-(1)절과 (2)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 (A) 미합중국의 행정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독립 기관 포함)이 특정인을 대신하여 미합중국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접근하는 경우, 또는 미합중국이 당사자이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 그리고
- (B)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특정인을 대신하여 컬럼비아 특별지구의 부서, 기관, 법정, 군법회의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에게 접근을 한 경우, 또는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당사자인거나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안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 (b) 지원과 조언에 대한 1년간의 제한

(1) 일반사항 - (a)절(1)의 제한을 받는 미합중국 행정부의 전직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나 입법부의 전직 관료이거나 피고용인, 전직 의원 중 미합중국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의 1년 이전에 미합중국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중인 무역 또는 조약 교섭에 상당 부분 개입하고 그러한 무역 또는 조약 교섭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위치에 있었으며, 그 정보가 5장의552조에 의거하여 누설이 면제되고, 그 면제를 해당 부 또는 기관이 지정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위 사람이 알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미합중국을 제외한) 진행중인 무역 또는 조약 교섭과 관련하여 미합중국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특정인을 돕거나, 대표하거나, 충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 조를 위반하는 자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 (2) 용어 정의 -

(A) “무역교섭”은 대통령이 무역과 경쟁에 관한 총괄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1102조에 따른 무역협정을 위한 교섭을 의미하며,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한 행동은 제외 된다; 또한

(B)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을 말하는데 이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c) 행정부와 독립기관의 고위급 관료에 대한 1년 제한

(1) 제한 - (a)와 (b)에서 명시한 제한에 추가하여 (2)절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행정부(독립 기관 포함)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정부의

특별 피고용인을 포함하여)이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미합중국 제외) 특정인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의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전 이내 그가 근무한 부 또는 기관의 관료또는 직원에게 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접근할 경우 이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2)제한이 적용되는 사람들 - (A) (1) 다음 사람에게 적용된다((d)의 제약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

- (i) 5장 53절의 II에 따르거나 이에 명시된 급료 체계에 따라 고용된 자;
- (ii) clause(i)에서 언급하지 않는 직책에 고용되고 이에 대한 기본 급료가 5장의 5302조에 의거한 지역 기반 급료 조정을 제외하고(또는 대통령의 궐위기간에 의거한 적절한 조정) 고위급 행정 근무체계(Senior Executive Service) 5급의 기본급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 (iii) 3장의 105조(a)(2)(B)에 따라 대통령이 고용하거나 3장의 106조(a)(1)(B)에 따라 부통령이 고용한 자;
- (iv) ( 37장의 201조에 따라) 지위가 O 7이상의 봉급체계를 따르는 준경의 현역 임명 관료;
- (v) 5장의 37절에 따라 민간 기관에서 기관으로 배치받은 자;

(B) (1)절은 그의 고용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하일 경우에 정부 특별 피고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C) 부서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윤리 사무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책임자은(ii)또는 (A)에 나타나는 그서 부 또는 기관의 직책 또는 직책분류와 관련하여 (1)의 제한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i) 직책에 대한 제한이 부 또는 기관이 그 직책을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고충을 초래하고,
- (ii) 제한을 철회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낳지 않을 경우.

**(d) 행정부와 독립 기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한**

(1) (a)와 (b)의 제한 사항과 더불어—

- (A) 미합중국의 부통령의 직책에 있는 자,
- (B) 미합중국(독립기관 포함)의 행정부 내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 Schedule) I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거나, 대통령실에 고용되어 행정체계(Executive Schedule) II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자, 또는
- (C) 대통령이 3장 105조(a)(2)(A)에 따라 고용을 하거나 부통령이 3장 106조(a)(1)(A)에 따라 고용한 자,

그리고 그 직책에서의 임무가 종료된지 1년 후 미합중국 행정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2)에서 설명한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자

는 이 장의 216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2) 접근해서는 안되는 사람 - (1)절의 (A), (B) 와 (C)에서 설명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문제시되는 사람( I에서 언급했듯이)은 다음과 같다-

(A) 미합중국 정부에서의 고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전 이내 근무했던 부 또는 기관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 또한

(B) 5장의 5312, 5313, 5314, 5315 또는 5316조에 기재된 행정부 직책에 임명된 자.

**(e) 국회의원과 입법부 관료 및 피고용인에 대한 제한-**

(1) 국회의원 및 선출 관료 -

(A) 국회의원이거나 상하원에 피선된 관료이자 의원직을 떠난 지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 또는 (C)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상하원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국회의원, 관료 또는 피고용인, 그리고 의회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

(C) (A)에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피선 관료가 접근할 경우 문



제가 되는 사람은 근무지였던 국회의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다.

(2) 비서진 - (A) 의회 의원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상하원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이 장의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 (A)에서 명시된 사람으로 전직 피고용인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

- (i) 피고용인의 고용주였던 상하원 의원; 또한
- (ii) 그 상하원 의원의 모든 피고용인.

(3) 위원회 직원(committee staff) - 의회 위원회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제외)의회 의원, 관료 또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회의 피고용인 또는 관계 종료 시점의 전해의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접근할 경우 이 조항의 조216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4) 지도부(leadership staff) - (A) 의회 지도부(leadership staff)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 제외) 의회의 의원, 관료,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 (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전직 피고용인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i) 하원의 지도부의 전직 피고용인의 경우 하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하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또한
- (ii) 상원의 지도부의 전직 피고용인의 경우 상원의 지도부의 모든 의원과 상원 지도부의 모든 피고용인.

(5) 기타 입법 사무국 - (A) 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 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신하여(미합중국을 제외한) 그 사무국의 관료또는 피고용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발휘하여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B)에서 명시한 사람에게 접근을 할 경우 본 장의 216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B) (A)에서 명시한 사람으로 전직 피고용인이 접근할 경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 피고용인이 근무했던 의회 입법 사무국의 관료들 및 피고용인이다.

(6) 제한에 대한 제한 - (A) (2), (3) 그리고 (4)의 제한 사항은 전직 피고용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의 근무기간이 최소한 총 60일이상 이고, 이에 대한 기본급이 고용인이었던 상하원 의원의 기본급의 7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B) (5)의 제한 사항은 전직 피고용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의 근무기간이 최소한 총 60일이상 이고 전 근무책의 기본급여률이, 5장 5302조에 의거한 지역에 따른 급여 조정과 상관없이(또는 대통령의 궐위기간에 의거한 적절한 조정), 고위 행정 체계(senior executive service) 5급의 기본급과 같거나 이보다 많을 경우에 적용된다.

(7) 용어 정의 -

(A) “연방의회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 공동 위원회, 특별 위원회를 포함한다;

(B) “의회의 피고용인”은 상원 또는 하원의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C) “하원의 피고용인”은 하원의 사무관이 봉급을 지급하는 하원의 피고용인, 하원 위원회의 피고용인, 의회 공동위원회의 피고용인과 하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D) “상원의 피고용인”은 상원의 총무가 봉급을 지급하는 상원 의원의 피고용인, 상원 위원회의 피고용인, 의회 공동위원회의 피고용인과 상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E) 사무관 채용 예산(clerk hire allowance)에 따라 하원 의원의 피고용인으로 고용된 자는 하원 의원의 피고용인으로 간주한다;

(F) 상원 의원의 사무실 내 직책에 고용된 자는 상원 의원의 피고용인으로 간주한다

(G) “의회의 기타 입법 사무국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의회 영선국(Architect of the Capitol), 미합중국 식물원, 일반 회계국, 정부 인쇄국, 의회 도서관, 기술평가 사무국, 의회 예

산국, 특허청(Royalty tribunal), 미합중국 수도 경찰, 그리고 이 절의 (1), (2), (3) 과 (4)에서 다루지 않은 사법부 소속의 기타 기관 또는 사무국의 관료 또는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H) “하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L)에서 설명한 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고용된 피고용인과 하원의 모든 선출 소수인종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I) “상원 지도부의 피고용인”이라 함은 (M)에서 설명한 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의 사무실에 고용된 피고용인을 일컫는다;

(J) ‘의회 의원’은 상하원의 원원을 일컫는다;

(K) “하원 의원”은 하원 의원, 대의원<sup>7)</sup>, 상주 대표<sup>8)</sup>를 의미한다.

(L) “하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 하원의 의장,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 다수당 총무, 소수당 총무, 민주당 운영 위원회 위원장, 다수당 원내 총무, 소수당 원내총무, 민주당 간부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Democratic caucus), 공화당 회의의 의장 및 부의장, 공화당 연구 위원회의 회장을 일컫는다 (또한 1989년의 윤리 개정법의102조 (a)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도입된 유사한 직책도 이에 해당한다).

(M) “상원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은” 상원의 부통령, 대통령 당선자(pro tempore), 부통령 당선자(pro tempore), 다수당 대표, 소수당대표, 다수당총무, 소수당총무, 다수당회의 (Conference of the Majority)의 의장과 총무, 소수장 회의 (COnterene of the Minority)의 의장과 총무, 다수당 정책

7)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음. (푸에르토리코)

8)결의권이 없는 판무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동 위원장, 소수당 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동 위원장을 일컫는다(또는 1989년의 윤리개정법의102조(a)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도입된 유사한 직책도 이에 해당한다).

### **18 U.S.C. §216 처벌 및 금지 명령**

(a)조 203, 204, 205, 207, 208 또는 209에 따른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금형 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2) 위반 행위에 계획적으로 가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본 장에서 명시하는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게 된다.

(b) 법무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해당 지방 법원에서 203, 204, 205, 207, 208 또는 209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실하여 위반 행위가 입증되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각 위반 사항에 대해 \$50,000이하의 민사처벌(civil penalty),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댓가로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벌금 중 액수가 많은 쪽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부조에 따른 민사처벌(civil penalty)의 부과는 미합중국 또는 특정인에게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타 형사 또는 민사상의 법령, 관습법, 또는 행정 교정법(administrative remedy)를 배제하지 않는다.



< 참 고 문 헌 >

- 법제처(1993). 주요 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
- 부패방지위원회(200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 윤대범(2004).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003).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25일).
- (2002).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부패방지위원회 공청회 주제발표논문)
- 이재명(2005).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장유식(2002). 주식로비를 근절한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방안.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 참여연대(2003).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한국법제연구원(2003).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정비 연구.
- 행정자치부(2004).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Academic Press(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 Anechiarico, Frank, James B. Jacobs.(1996). *The Pursuit of Absolute Integrity*.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 Atkinson, Michael M. & Maureen Mancuso.(1992). Edicts and etiquette: Regulating conflict of interest in Congress and the House of Commons. *Corruption and Reform*. 7. pp.1-18.
- Bowman, James S.(2001). From Code of Conduct to Code of Ethic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 Davis, Michael.(1998). Conflict of Interest. in Academic Press (1998).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 Hallgarth, Matthew W.(1998). Consequentialism and Deontology.

-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pp.609-621,
- Hondeghem, Annie.(1998). *Ethics and Accountability in a Context of Governa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IOS Press.
- Langseth, Petter, Rick Stapenhurst & Jeremy Pope.(1997). The Role of a national Integrity System in Fighting Corruption. *EDI(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World Bank) Working Papers*. 400/142.
- OECD.(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00). *Trust in Government*.  
 -----(1996).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 Current Issues and Practice*.
- Plant, Jeremy F.(2001). Code of Ethics. in Terry L. Cooper(2001).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Marcel.
- Pritchard, Jane.(1998). Code of Ethics. in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527-34.
- Roberts, Robert N.(2001). *Ethics in U.S. Government*. Greenwood Press.
- Roberts, Robert N., & Marion T. Doss, Jr.(1992). Public Service and Private Hospitality:A Case Study in Federal Conflict-of- Interest Reform, *PAR*. 52:260-270.
- Rohr, J. A.(1998). *Public Service, Ethics & Constitutional Practice*. Kansas.
- Thompson, Dennis F.(1987). *Political Ethics and Public office*. Harvard Univ. Press.
- U.S. House Re.(1992). *Ethics Manual*.
- U.S.OGE.(2003). *Compilation of Federal Ethics Laws*.  
 -----(1999). *Standards of Ethical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1996). *Public Financial Disclosure : A Reviewer's Reference*.
- U.S. Senate.(1978). *Memorandum*.  
 -----(2003). *Rules of Committee on Standards of Official Conduct*.  
 -----(2003). *Senate Ethics Manual*.